

연구보고서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2007. 1

이장희 · 김동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머 리 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은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금융업종간의 경쟁심화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이러한 국제화와 금융업종간 경쟁 심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국제화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심의위원회(IASB)는 국가간 회계정보의 객관적인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도 2010년 실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은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보고는 물론 상품 개발, 자산운용, 지급여력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 및 감독체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 분석을 위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 경과, 주요 내용, 시가평가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기준과 도입이 예정된 국제보험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가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대응방안 마련과 준비에 활용되어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7년 1월

보 험 개 발 원
원 장 김 창 수

< 목 차 >

요 약	11
I. 서 론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3
II. 국제보험회계의 주요내용	25
1. 제정취지 및 배경	25
2. IASB의 보험회계관련 기준서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	26
3. 1단계 작업의 주요 내용	33
4. 2단계 작업의 주요 내용	36
5. 국내보험회계기준 및 보험관행과의 비교	39
6. 책임준비금 평가방법 비교	43
III. 외국의 보험부채 평가제도	50
1. 캐나다	50
2. 영국	60
3. 호주	77
IV.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의 영향 분석	83
1. 기본 가정	83
2. 사망률 악화시	88
3. 사망률 개선시	90
4. 이자율 하락시	93

5. 이자율 상승시	95
6. 분석에 따른 시사점	97
V.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99
1.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99
2.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104
VI. 결론	112
참고문헌	115
[부록]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사례 분석	118

<표 차례>

<표 II-1> IFRS 4 진행경과	29
<표 II-2> IFRS 4 목차	31
<표 II-3>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적용범위	34
<표 II-4> IFRS 4의 주요내용	36
<표 II-5> 국제보험 회계기준과의 비교	40
<표 II-6> 기존 보험관행과의 비교	42
<표 II-7> 부채 평가 방법별 비교	49
<표 III-1> 캐나다의 보험시장 규제환경	53
<표 III-2> CALM 평가방법 순서	55
<표 III-3> 캐나다 제도상의 주요특징	57
<표 III-4> 영국의 보험회계관련 법규체계	61
<표 III-5> 과거법과 장래법에 의한 부채평가 비교 예시	72
<표 III-6> 탄력적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Stress Test	74
<표 IV-1> 연간 추정 사망률 가정	85
<표 IV-2> 가격 산정시 사용한 생존자, 사망자 수	85
<표 IV-3> 기본가정 당기순이익 요약	86
<표 IV-4> 사망률 악화 가정	88
<표 IV-5> 사망률 악화시 당기순이익 요약	89
<표 IV-6> 사망률 개선 가정	90
<표 IV-7> 사망률 개선시 당기순이익 요약	91
<표 IV-8> 이자율 하락시 당기순이익 요약	93
<표 IV-9> 이자율 상승시 당기순이익 요약	96
<별표 1-1> 기본가정 발행연도법 적용 대차대조표	118
<별표 1-2> 기본가정 발행연도법 적용 손익계산서	119
<별표 1-3> 기본가정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120
<별표 1-4> 기본가정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121

<별표 1-5> 기본가정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122
<별표 1-6> 기본가정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123
<별표 2-1> 사망률 악화시 발행연도법 적용 대차대조표	124
<별표 2-2> 사망률 악화시 발행연도법 적용 손익계산서	125
<별표 2-3> 사망률 악화시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126
<별표 2-4> 사망률 악화시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127
<별표 2-5> 사망률 악화시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128
<별표 2-6> 사망률 악화시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129
<별표 3-1> 사망률 개선시 발행연도법 적용 대차대조표	130
<별표 3-2> 사망률 개선시 발행연도법 적용 손익계산서	131
<별표 3-3> 사망률 개선시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132
<별표 3-4> 사망률 개선시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133
<별표 3-5> 사망률 개선시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134
<별표 3-6> 사망률 개선시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135
<별표 4-1> 이자율 하락시 발행연도법 적용 대차대조표	136
<별표 4-2> 이자율 하락시 발행연도법 적용 손익계산서	137
<별표 4-3> 이자율 하락시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138
<별표 4-4> 이자율 하락시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139
<별표 4-5> 이자율 하락시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140
<별표 4-6> 이자율 하락시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141
<별표 5-1> 이자율 상승시 발행연도법 적용 대차대조표	142
<별표 5-2> 이자율 상승시 발행연도법 적용 손익계산서	143
<별표 5-3> 이자율 상승시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143
<별표 5-4> 이자율 상승시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144
<별표 5-5> 이자율 상승시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145
<별표 5-6> 이자율 상승시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146

<그림 차례>

<그림 II-1> 국제보험회계기준 제정 국제동향 및 국내대응	28
<그림 II-2> IFRS 4에 의한 회계처리 흐름도	32
<그림 III-1> 캐나다의 보험부채평가제도의 변천	52
<그림 III-2> 영국의 생명보험상품 포트폴리오	62
<그림 III-3> 영국의 생명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63
<그림 III-4> Twin peaks approach의 개요 1	65
<그림 III-5> Twin peaks approach의 개요 2	66
<그림 III-6> 영국의 보험부채평가 업무 흐름도	76
<그림 III-7> 보험회계 관련 규정의 관계	79
<그림 IV-1> 기본가정 그래프	87
<그림 IV-2> 사망률 악화시 그래프	90
<그림 IV-3> 사망률 개선시 그래프	92
<그림 IV-4> 이자율 하락시 그래프	94
<그림 IV-5> 이자율 상승시 그래프	97

요 약

I. 서론

- 현재 금융시장 국제화에 따른 국가간 보험회계의 통일성 제고 및 객관적 회계정보 제공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국제보험회계기준 제정은 책임준비금의 산출·보고 이외에 상품개발, 자산운용, 지급여력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 및 감독체계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본 연구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해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재무제표의 비교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II. 국제보험회계의 주요 내용

-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2002년 3월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1단계로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4 : IFRS 4)을 2004년 3월 발표하였음.
 - 1단계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를 위한 사전적 경과조치로 우선 평가대상 계약 구분, 최선 추정원칙, 미래현금흐름 분석 및 공시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 2단계에서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한 시가평가의 도입, 최선추정의 변동위험에 대비한 준비금의 적립, 책임준비금 증감에 의한 당기손익의 측정, 신계약비의 당기비용 처리 등에 관해 다루고 있음.

1. 1단계 작업의 주요 내용

- 기존 보험사 중심의 회계에서 보험계약 중심의 회계로 전환되며, 보험계약에만 적용되고 IAS 39(금융증권의 인식 및 측정)의 범위에 있는 보험사의 다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 및 공시가 실체(entity)중심에서 활동(activity)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반영함.
-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을 분리하여 보험계약을 보험리스크가 보험계약자에서 보험사로 전가되는 계약으로 한정하여 투자계약과 구분함.
 - 따라서 보험계약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투자계약인 금융재보험 등은 투자계약으로 분류하여 일반회계기준 중 투자계약 평가기준(IAS 39)을 적용
- 옵션 및 보증 등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를 통해 무진단 계약전환과 같은 옵션(Option) 및 보증(Guarantee) 등 내재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은 보험계약으로 부터 분리하여 시가로 평가함.
 - 다만 주보험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밀접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분리가 곤란한 경우 제외함.
- 수입보험료를 저축요소와 위험요소로 분리하여 저축요소는 투자계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채로 계상 후 시가로 평가함.
 - 장기손해보험 일부상품, 변액연금 등의 저축요소가 특별계정으로 계상되는 것과 같이 분리가 용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상 신

- 퇴성 있는 분리가 곤란한 경우는 분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수입보험료 중 보험요소만 보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저축요소는 은행의 예수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일반 부채의 증가로 인식함.
- 최선 추정을 채택하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평가시 예정기초율에 적용하는 안전할증(Safety Margin)의 사용을 금지함.
 - 일반적으로 평균적 위험률에다 위험률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한 안전할증을 추가하여 보수적(안정적)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산출하고 있음.
 - 미래의 보험금 등 지급금의 예상 지출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고 예상 지출액의 총액으로 지급준비금 등을 산출하는 미할인 평가방식의 사용을 금지함.
 -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부채 중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포함한 지급준비금도 동일하게 현재가치할인을 적용함.
 - 미래의 거대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 또는 평준화준비금(Equalization Provision)은 책임준비금으로 불인정하고 다만 동 준비금을 자본항목으로 적립하는 것은 허용함.
- 책임준비금 평가에 대한 공시수준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해 정보이용자가 '경영진의 시각에서(Through the eyes of management)' 보험사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함.
 - 재무제표상 금액과 손익·자본의 보험환경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양적·질적 정보 제공을 요구함.

2. 2단계 작업의 주요 내용

- 2단계에서는 책임준비금을 공신력 있는 시장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임.

- 주요 내용은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한 시가평가의 도입, 최선추정의 변동위험에 대비한 준비금의 적립, 책임준비금 증감에 의한 당기손익의 측정, 신계약비의 당기비용 처리 등임.
- 보험금 지급채무인 책임준비금의 시장가격은 재보험 출·수재시의 재보험료, 기업인수·합병시 보험계약의 인수가격 등 부분적, 예외적으로만 존재
- 모든 책임준비금에 대해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책임준비금의 시가를 추정할 수 있는 대안적 평가방법의 탐색 필요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미래에 발생될 현금의 유출과 유입액을 모두 감안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의 대체수단으로 채택
 -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할인이자율은 무위험이자율(risk-free rate)을 적용
 -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배당금뿐만 아니라 손해조사비, 사업비 등 보험경영과 관련된 모든 수입 및 지출을 고려(영업보험료방식)
- 책임준비금이 미래현금흐름의 최선의 추정치에 의해 결정될지라도 통제 불가능한 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추정치의 변동위험은 상시 존재
- 보험사는 미래현금흐름의 최선추정치 변동위험을 보험계약의 판매와 동시에 부담하게 되므로 보험사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 최선추정치의 변동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추정치에 의한 책임준비금에 추가적인 마진(Margin)을 추가로 적립
 -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액은 미래현금흐름의 최선추정치에 의해 평가된 금액과 최선추정치의 변동위험에 대비한 시장가치마진(MVM ; Market Value Margin)으로 구성

-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에서는 보험계약관련 손익이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크게 2개 부분에서 발생
 - 예정기초율의 변동에 따른 미래현금흐름 최선추정치의 변동과 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액은 당기손익 인식
 - 보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래현금흐름 최선추정치의 변동위험은 감소하게 되고 당해 추정치의 변동위험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적립한 시장가치마진의 감소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
- 시장가치마진은 미래현금흐름의 최선추정치 변동 관련 매기간별 잔존 위험의 측정수준에 따라 기간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관련 정보에 대한 충분한 공시를 요구
 - 기업간·기간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손익조작의 개연성을 제거하기 위한 시장가치마진 측정기준을 객관화·정교화할 필요성 제기
- 손익의 안정적 평가를 위해 보험경영의 특수성에 따라 보험기간 초기에 지출된 신계약비를 이연한 후 점진적으로 상각시키는 신계약비의 이연·상각제도는 불인정
 -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수단인 현금흐름할인법에서는 신계약비 지출을 즉시 전액 당기비용으로 반영

3. 책임준비금 평가방법 비교

- 발행연도법에서는 손해액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기에 결정된 기초율을 이용하고 이러한 가정들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가정함.
 -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화는 손익으로 인식하게 됨.

- 신계약비를 비롯한 회수 가능한 취득원가는 자산으로 인식되며,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상각하게 됨.
 - 초기에는 수익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로 인해 초기 부채측정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마진을 포함하게 됨.
 - 부채의 적정성 검증은 보험부채의 장부상 금액과 미래 현금흐름의 갱신된 추정치를 비교하게 됨.
- 현행유입가치법(Current entry value approach)은 보험사 부채를 보험사가 현재의 계약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계약을 취득, 즉 유입할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약속을 해야 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함.
- 본 방법은 (a) 보험부채를 계약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로 측정을 하고, (b)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며, (c) 회수가 가능한 취득비용은 부채평가시 현금흐름에 반영되어 부채를 감소시키기에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d) 초기 수익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 부채의 초기 추정치는 명목적 암묵적 마진을 포함하게 됨.
 - 각 보고일마다 갱신된 현재의 불편추정치(unbiased estimates)를 사용하며, 할인율은 현재의 무위험 시장 할인율을 사용하게 됨.
 - 만일 추정치와 할인율이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은 필요하지 않고, 계약의 신용특성(credit characteristic)은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 현행유출가치법(Current exit value approach)은 보험부채 측정을 현재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다른 실체에게 이전, 즉 유출될 경우 다른 실체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함.
- 현행유출가치법은 명시적으로 부채의 신용특성을 반영하는 반면 현행유입가치법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거나 전혀 반

영을 하지 않으며, 현행유출가치법은 부채적정성 검증을 포함하지 않으나 현행유입가치 법에서는 이러한 검증이 초기에 필요함.

III.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의 영향 분석

-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상의 보험회사를 설정하였음.
 - 기존에 사용되는 회계처리 방법인 발행연도법(Lock-in approach)과 향후 도입이 예정된 평가연도법(Lock-out approach)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 두 가지에 의해 각각의 재무제표를 산출하여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하였음.
 -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황적 분석을 위해 기본 가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주요한 두 가지 기초율인 사망률과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재무제표를 산출하였음.
- 그 결과 기초 가정이 상품의 만기시까지 그대로 지속이 되는 경우, 사망률이 악화되는 경우, 사망률이 개선되는 경우,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의 5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이 보험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기초 가정이 상품 만기시까지 지속되는 기본 가정의 경우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은 신계약비의 이연상각으로 인해 초기 이익이 다른 방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계약의 후반부로 갈수록 당기순이익이 다른 회계처리 방법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 신계약비의 당기 비용처리로 인해 현행유입가치법이 x1년도의 당기순이익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초기 이익 인식으로 인해 x1년도의 당기순이익이 현행유입가치법보다 높게 나타났음.

- 사망률이 악화 또는 개선된 경우 발행연도법은 기초 제 가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망자 수의 증감에 따른 보험금의 증감, 보험료의 증감, 그리고 이로 인한 이자수익의 증감에 따른 당기 순이익의 증감만을 반영하기에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음.
 - 반면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사망률 악화 또는 개선에 따른 변화분을 일시에 인식하게 되어 당기순이익이 급감 또는 급증하였음.
- 이자율이 하락한 경우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은 기초율이 변경된 해에 이자율 하락에 따른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과 이자수익 감소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발행연도법 대비 급감하였음.
 - 반면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액의 감소와 이자수익 증가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였음.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의 경우 이익변동폭이 새로 도입되는 회계처리방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 대비 작은 경향이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제 가정 및 기초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더욱 극대화되는데 이는 새로 도입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경우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도입하고 있기에 매 회계연도말에 보험부채의 평가를 통해 변동액을 직접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임.

IV.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부채의 시가평가임.
 - 현재 보험사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은 상품 판매시의 기초율을 계약기간 만기시까지 적용하는 발행연도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매 회계연도말에 해당 회계연도말의 기초율을 사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재평가하게 됨.
 - 이 경우 기초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은 바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기에 당기순이익 변동폭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업계는 재무제표의 변동성 증대, 이익변동성 증대에 따른 자본 조달 비용의 상승, 투자형/단기 상품의 확대, 단기 위주의 자산 운용, 위험관리 개념 변화와 같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영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경영진 및 보험업계 전체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며,
 - 보험가격 산출체계의 선진화, 시장 환경 시나리오의 적절한 예측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계리 전문가의 양성, 리스크 감독체계의 구축, 자율적인 계리 업무의 권한 인정, 계리시스템에 대한 요건 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적정성 분석의 도입 등이 필요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회계정보시스템의 목적과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따라 주요 정보신호인 당기순이익의 규모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회계기준의 변경은 기업경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회계기준을 둘러싸고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라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까지 글로벌 스탠다드 역할을 하던 미국의 회계기준이 엔론사태를 비롯한 회계스캔들로 인해 주도권이 유럽국가에 주축이 된 국제회계기준심의위원회(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¹⁾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국가간 보험회계의 통일성 제고 및 금융의 종합화로 보험과 저축이 혼재된 금융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회계정보 제공의 필요성으로 인해 IASB가 국가간, 금융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융통합화·국제화 진전에 따라 IASB는 보험회계의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 증대를 위해 1997년부터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를 주내용으로 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단계에 걸친 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1) 2000년 5월까지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ommittee)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였으나, 2001년 4월부터 상임회계기준위원 12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된 IASB 체제로 강화하였다. 위원회의 국가별 구성은 미국 5명, 영국 2명,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남아공, 스웨덴이 각각 1명씩이다. IASB가 정한 국제회계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EU를 중심으로 이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그 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미국은 최근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1단계는 2004년 3월 최초의 국제보험회계기준인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4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4)을 발표함으로써 종결되었다. IFRS 4는 2단계의 핵심내용인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도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과도기적 기준이며, 2단계에서는 책임준비금시가평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최종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당초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국가간의 이견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IFRS 4를 자국의 보험감독제도에 도입한 나라는 호주가 유일한 상태이며, 그 외의 국가에서는 IFRS 4를 적용하기 위하여 자국의 감독체계 관련 법규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1단계 IFRS 4의 제정 취지는 궁극적으로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2단계에서는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번 국제보험회계기준 제정은 책임준비금의 산출·보고 이외에 상품개발, 자산운용, 지급여력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 및 감독체계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보험업계 및 감독자들은 동 회계기준 제정 초기부터 연구를 거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관련 준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한국의 경우 자체 연구검토 또는 국제회의 참여 등의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 금융산업이 국제화됨에 따라 보험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IASB의 보험회계기준 제정 방향 및 외국의 준비과정 등을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상의 보험회사를 가정하고,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통해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방안과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보험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국내에서의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김해식(2001)의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등이 있다. 이 연구는 현안보고서와 기준서 초안에 나타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 관련 논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손성동·최용석·문성훈(2003)의 연구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내용 및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손성동·최용석·문성훈(2003)의 연구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 동향 및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등 국제보험회계기준 제정 배경을 파악하고,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김해식(2004)의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보험회계 관행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제네바학회(2004)에서는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에 대해 보험사 CEO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단기형 외부보고체계와 보험상품의 장기적 성격의 괴리, 재무성과의 추세와 향후 이익의 불확실성 증대, 보험공급능력의 축소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의 핵심내용인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책임준비금의 평가와 이에 따라 변동되는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가상의 보험회사를 가정하고 현행 회계기준과 향후 도입이 예정된 국제보험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추진과정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부채평가방법에 대해 발행연도법(Lock in approach), 그리고 평가연도법(Lock-out approach)인 현행유입가치법(Current entry value approach)과 현행유출가치법

(Current exit value approach)에 대해 비교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부분 적이라도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하고 있는 캐나다, 영국, 호주의 보험부채 평가제도 운용 사례를 통해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가상의 보험회사를 통해 기본 가정, 사망률 악화시, 사망률 개선시, 그리고 이자율 하락시와 이자율 상승시 각각 현행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와 새로 도입될 예정인 국제보험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비교를 통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제Ⅳ장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결론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II. 국제보험회계의 주요 내용

1. 제정취지 및 배경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997년 “국제보험회계 프로젝트”를 채택하여 국가간, 금융상품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보험회계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는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공정가액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나라별 이견들이 있었으며, 특히 미국이 IASB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확정적인 기준안을 도출해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2002년 3월에는 IASB에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단계적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중 1단계로 Phase I 이라고 불리는 국제재무보고기준서(IFRS 4)가 2004년 3월 작업이 완료되어 공표되었다. 동 IFRS 4는 2005년부터 EU 국가의 상장회사에 대해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결정²⁾되었으며, 호주는 자국의 보험감독법규에 반영하는 등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2005년 7월 EU의 금융증권감독기구(CESR; 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는 미국, 일본, 캐나다에 각국 기준을 IFRS와 합치하도록 요구하는 등 IASB가 정한 보험회계에 관련한 기준서는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장기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통한 재무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유용성 강화 등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으로 향후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가 주목하고 대비하여야 할 부분이다.

2) IFRS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는 EU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U기업의 숫자는 28개국에서 8,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IFRS 4의 주요 내용 및 PhaseⅡ의 방향성을 선진 외국의 보험부채시가평가제도를 토대로 비교·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IASB의 보험회계관련기준서 제정경과 및 주요 내용

가. IFRS의 제정 경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은 국제자본시장의 고속성장에 따른 국가간 통일된 기업회계기준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1995년 국제증권감독자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 IOSCO)가 IASB의 전신인 IASC³⁾에게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및 제정을 요청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IASC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해 3년간 회계기준의 재정비 과정을 통해 핵심 회계기준들을 제시하여 국제회계기준의 틀을 정비하였다. 특히 1997년에는 IASC 보험실무위원회(Insurance Steering Committee)에서 보험계약 이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1998년말 기준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s : Recognition and Measurement)를 완성하였다. 1999년 12월에는 보험현안보고서인 Issue paper on Insurance를 발간하였으며, 2001년 11월에는 국제보험회계기준 초안인 Draft Statement of Principles of Insurance Contracts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그 후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1, 2단계에 걸쳐 보험회계 기준서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1단계로

3) 기존의 IASC는 비상임위원회체로 운영이 되었으나 2001년 4월 상임위원 12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명칭이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로 변경되었다.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4 : IFRS 4)을 2004년 3월 제정 발표하였다. 최초의 국제보험회계기준인 IFRS 4는 2005년 1월부터 EU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EU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⁴⁾, 캐나다 및 호주의 경우에도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수용했거나 할 예정이다⁵⁾.

2단계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에 대한 IASB의 시각에 대한 Discussion Paper가 2007년 1/4 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며, 국제보험회계기준 초안서의 공개는 2008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후 공개된 기준서 초안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 및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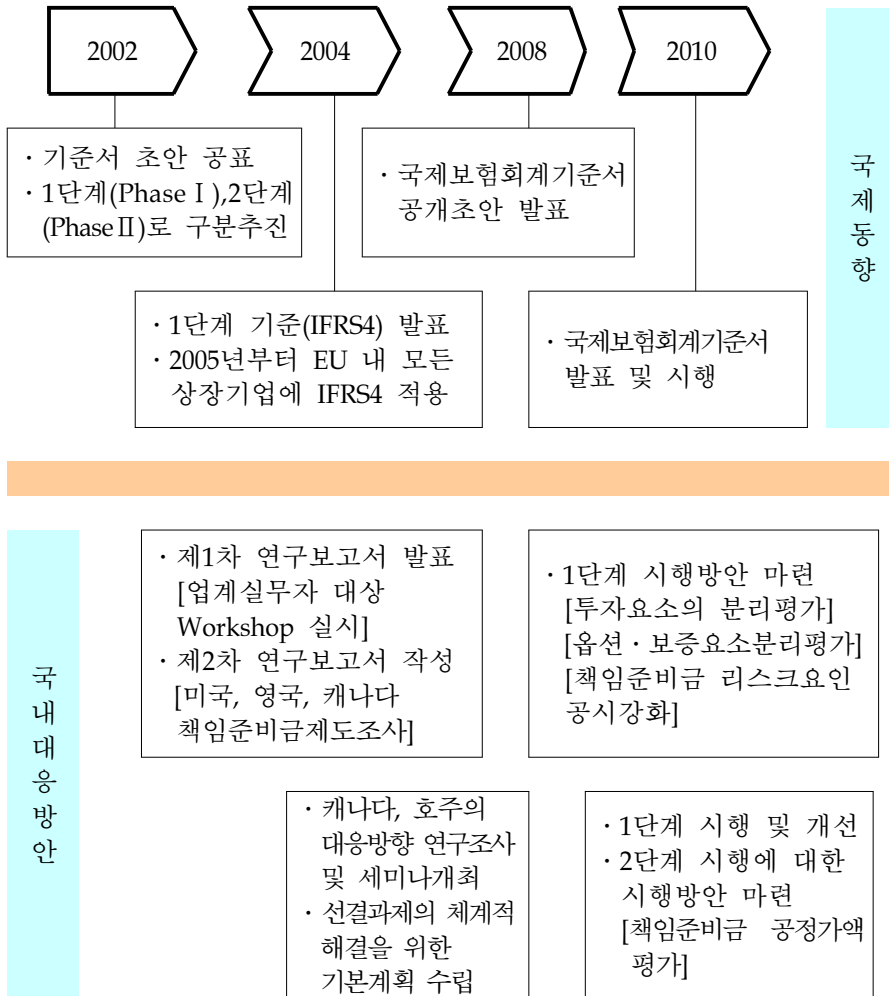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대비하여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보험회계기준서 제정에 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험업계의 계리업무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국제보험회계와 관련되어 이미 2004년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작업반이 진행되었으며, 제1차 작업반의 경우에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및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국제동향에 대한 연구 및 조사 내용을 가지고 업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제2차 작업반에서는 국제보험회계 및 미국, 영국, 캐나다의 책임준비금제도를 연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2006년에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3차 작업반을 구성하여 캐나다 및 호주의 IFRS 4

4) 2007년부터는 미국재무회계기준인 US GAAP을 사용하는 기업과 채권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5) 호주의 경우 2005년부터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완전 수용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의 복수 대안 중 일부 삭제 또는 추가 공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공개기업은 향후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전면 수용할 예정이고, 비공개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구를 조사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2006년 9월 현재 약 100여 개국이 그 유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IFRS 사용을 동시 허용, 강제 적용 혹은 일부 수용하고 있다.

에 발표에 따른 대응 및 보험회계에 대한 감독체제를 조사 중에 있으며, 각 나라별 보험부채평가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림 II-1> 국제보험회계기준 제정 국제동향 및 국내대응



<표 II-1> IFRS 4 진행경과

기간	주요내용
1997 IASC Insurance Steering Committee ⁶⁾	- 보험계약 Issue에 대한 논의시작
1998 : IAS39, IAS32	- IAS39(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 IAS32(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 등 승인
1999. 12	- 보험현안보고서 발표 (Issue paper on Insurance)
2001. 11 : DSOP	- Draft Statement of Principles of Insurance Contracts 공개
2002. 5	- Two phase Approach (Phase I, II)
2003. 5	- Exposure Drafts 5 (ED5) 공개
2004. 3	- IFRS4 완료, Completing Phase 1
2004. 9	- PhaseII 논의 시작
2005. 1	- EU내 모든 상장기업에 IFRS 4적용 의무화
2007. 3(예정)	- PhaseII에 대한 Discussion Paper 공표
2008(예정)	- Exposure Drafts 발표는 18개월 소요예상
2009(예정)	- Final Standard 12개월 소요 예상
2010(예정)	- 국제보험회계기준서 발표 및 시행

나. IFRS 4의 목차

국제회계기준 중 보험계약과 관련된 국제재무보고기준인 IFRS 4는 서론과 45개의 조항과 3개의 부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표 II-2>에

6) Insurance Advisory Committee 가 설립되면서 해체되었다.(2000년)

제시된 모든 조항들은 서로 동일한 위치 및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굵게 표시된 부분이 주요한 원칙이다. 이탤릭체로 표시된 용어들은 IFRS 4에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서 부록 A에 정의되어 있으며, 나머지 다른 용어들은 이미 국제회계보고기준에 정의되어 있다.

서론에는 IFRS 4가 보험 계약을 다루는 최초의 국제회계보고기준으로서 보험계약을 다루는 회계가 다른 분야의 회계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업계가 2005년 IFRS의 적용을 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향후 보험계약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2단계가 완성될 때까지는 제한적인 개선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IFRS 4는 보험계약 프로젝트의 2단계를 위한 시금석임을 선언하고 있다.

제1조는 IFRS 4에 대한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12조까지는 IFRS 4의 범위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13조에서 35조까지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36조에서 39조까지는 공시에 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40조에서 45조까지는 시행 시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용어의 정의(Defined Terms), 보험계약의 정의(Definition of an insurance contract), 기타 IFRS의 수정(Amendments to other IFRSs)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외에 결론도출근거(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4 insurance contracts)⁷⁾, 실무이행지침(Guidance on implementing IFRS 4 insurance contracts) 등을 정리하고 있다.

7) 결론도출근거(Basis for conclusions)에서는 IFRS 4가 제정되는 과정 중에서 이슈화된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이견 등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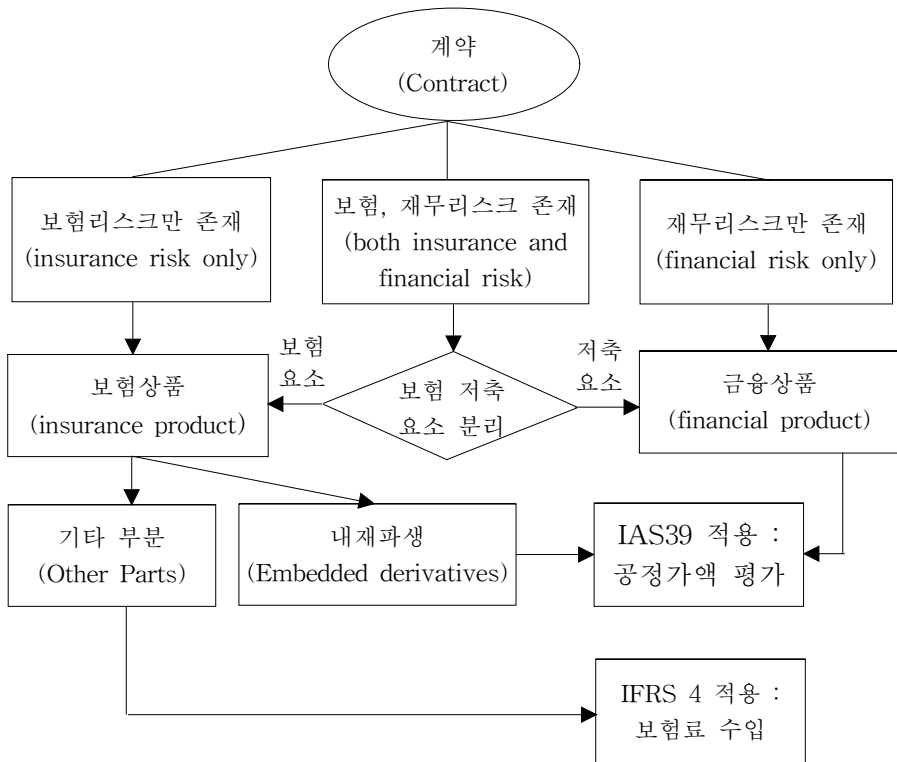
<표 II-2> IFRS 4 목차

목차	조항
서 론	IN 1 - IN 13
목 적	1
범 위	2-12
내재파생상품	7-9
저축요소의 분리	10-12
인식 및 측정	13-35
기타 IFRS조항에 대한 일시면책	13-20
부채적정성 테스트	15-19
재보험자산의 감액	20
회계기준의 변경	21-30
현행시장금리	24
기존 관행의 유지	25
신중성	26
미래투자수익	27-29
새도우 어카운팅	30
기업합병 또는 포트폴리오 이전으로 인수된 보험	31-33
임의배당요소	34-35
보험계약의 임의배당요소	34
금융상품의 임의배당요소	35
공 시	36-39
인식금액에 대한 설명	36-37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38-39
효력발효일 및 경과조항	40-45
공 시	42-44
금융자산의 재분류	45
부 록	
A - 용어정리	
B - 보험계약의 정의	
C - 기타 IFRS의 수정	
결론도출근거	
실무이행지침	

다. IFRS 4에 의한 회계처리 흐름

IFRS 4에 의한 회계처리는 우선 해당 계약의 성격이 보험 리스크만 있는지, 아니면 재무 리스크만 있는지 또는 두 가지 성격이 모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재무 리스크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한 후 IAS 39를 적용하여 공정가액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림 II - 2> IFRS 4에 의한 회계처리 흐름도



자료 : Trowbridge Deloitte, Asia prophet users group meeting 2004.

반대로 보험 리스크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으로 보고 내재파생상품과 기타 부분으로 분리를 하여 내재파생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기타 부분은 IFRS 4 를 적용하여 보험료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보험 리스크와 재무 리스크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로 분리하여 보험 요소는 보험 리스크에 준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저축요소는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IAS 39를 적용하여 공정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3. 1단계 작업의 주요 내용

1단계는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를 위한 사전적 경과조치로서 시가평가기준 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우선 대상 계약 구분, 최선 추정원칙, 미래현금흐름 분석 및 공시 등 시가평가를 위한 기본적 바탕의 정립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가. 보험계약 중심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 및 공시가 실체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기존의 보험자 중심의 회계에서 보험계약 중심의 회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보험계약에만 적용되고 IAS 39(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의 범위에 있는 보험회사의 다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보험계약(A)은 물론 보험회사가 아닌 일반기업들의 보험관련거래(B)도 보험회계기준의 대상범위로 하지만, 반대로 보험회사의 일반거래(C)는 보험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표 II-3>참조).

<표 II-3>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적용범위

구 분	보험회사	비보험회사
보험계약	A	B
비보험계약	C	-

주 : IASB의 보험관련 회계기준서는 보험거래(A, B)의 특수성만을 반영한 회계 기준이고, 가격위험만을 갖는 파생상품이나 재무위험만을 지니는 금융자산 및 부채(C)는 일반기업의 회계처리와 다를 이유가 없으므로 IAS 39(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를 적용함.

나. 계약내용의 요소별 분리 평가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에서는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의 분리를 통해 보험리스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자에게 전가되는 계약으로 한정하여 투자계약과 구분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투자계약인 금융재보험 등은 투자계약으로 분류하여 일반회계기준 중 금융상품 평가기준인 IAS 39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옵션 및 보증 등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로 인해 무진단 계약전환과 같은 옵션 및 보증과 같은 내재파생상품은 보험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다만 주보험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밀접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분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일례로 해약 옵션은 원칙적으로 분리제외 대상이지만 해약 옵션의 가치가 주거나 물가와 같은 재무변수와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하여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저축요소와 보험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 요소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수입보험료를 저축요소와 위험요소로 분리하여 저축요소는 IAS 39에 의한 투자계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채로 계상한 후 시가로 평가한다. 즉, 수입보험료 중 보험요소만 보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저축요소는 은행의 예수금과 동일하게 단순

한 일반 부채의 증가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저축요소 및 위험요소의 신뢰성 있는 분리 측정이 실무상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최선 추정 채택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에서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평가시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등 예정기초율에 적용하는 안전할증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는 평균적 위험률에 위험률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한 안전할증을 추가하여 보수적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함이다.

미래의 보험금 등 지급금의 예상 지출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고 예상 지출액의 총액으로 지급준비금 등을 산출하는 미할인 평가방식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부채 중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포함한 지급준비금도 동일하게 현재가치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거대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 또는 평준화준비금(Equalization Provision)은 책임준비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 준비금을 자본항목으로 적립하는 것은 허용하였다.

라. 책임준비금 평가에 대한 공시수준의 양적·질적 향상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에서는 정보이용자가 경영진의 시각에서 보험회사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상 금액과 손익·자본의 보험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성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양적·질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과거 책임준비금 평가의 적정

성 등에 대한 투명성과 보험사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표 II-4> IFRS 4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저축요소의 분리 (Unbundling of deposit components)	- 보험계약요소(투자/보험) 분리 (저축요소에 대하여는 IAS39 적용)
내재파생상품 (Embedded derivatives)	- 내재파생상품의 분리평가(내재파생 상품에 대하여도 IAS39 적용)
공시(Disclosure)	- 공시수준의 질적·양적 향상
IFRS 4 결론도출근거 중 할인	- 미할인방식의 평가방식 사용 금지 - 보수적 책임준비금 계상 금지 (준비금평가시 기초율적용에 안전 할증 사용금지)
IFRS 4 결론도출근거 중 비상위험준비금,평준화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불인정

4. 2단계 작업의 주요 내용

2단계(Phase II)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공신력 있는 시장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단계의 제정 방향은 IFRS 4 결론도출근거 중 “2단계에 대한 잠정적 결론”(Tentative conclusions for phase II)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제시한 2단계의 방향성은 미래현금흐름방식의 자산부채평가법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①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계약

적 권리와 의무를 직접 식별하고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자산부채 평가법(asset-and-liability approach)이 되어야 하고, ②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액(fair value)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③ 신계약비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2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향후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요 사항은 ① 측정모델은 보험계약의 개별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 ② 배당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측정방법에 대한 것이다.

가.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한 시가평가

보험금 지급채무인 책임준비금의 시장가격은 재보험 출·수재시의 재보험료, 기업인수·합병시 보험계약의 인수가격 등 부분적, 예외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책임준비금에 대해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책임준비금의 시가를 추정할 수 있는 대안적 평가방법의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미래에 발생할 현금의 유출과 유입액을 모두 감안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의 대체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할인이자율은 미래현금흐름에 리스크를 반영할 경우 무위험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까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입장이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고위험자산을 보유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오히려 작아지는 역선택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자산투자수익률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나. 최선추정의 변동위험에 대비한 준비금 적립

책임준비금이 미래현금흐름의 최선추정치에 의해 결정되어도 통제 불가능한 변수의 변동에 의한 추정치의 변동위험은 상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미래현금흐름의 최선 추정치 변동위험을 보험계약의 판매와 동시에 부담하게 되므로 보험사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추가적인 마진은 추정치의 변동위험이 존재하는 한 책임준비금의 항목으로 최선추정치에 따른 책임준비금에 더하여 추가로 적립되어 최선추정치의 변동위험에 대비하게 된다. 따라서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액은 미래현금흐름의 최선추정치에 의해 평가된 금액과 최선추정치의 변동위험에 대비한 시장가치마진(Market Valuation Margin; MVM)으로 구성된다.

다. 책임준비금 증감에 의한 당기손익 측정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에서는 보험계약 관련 손익이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크게 두 부분에서 발생하게 된다. 우선 각 회계연도 말 현재 예정기초율의 변동에 따른 최선추정치의 변동과 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추정치의 변동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보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선추정치의 변동위험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당해 추정치의 변동위험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적립한 시장가치마진의 감소액도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간·기간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손익조작의 개연성을 제거하기 위해 시장가치마진 측정기준을 객관화·정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가치마진은 미래현금흐름의 최선추정치 변동과 관련하여 매기간별 잔존위험의 측정수준에 따라 기간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정보에 대한 충분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라. 신계약비의 당기비용 처리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손익의 안정적 평가를 위해 보험경영의 특수성에 따라 보험기간 초기에 지출된 신계약비를 이연한 후 점진적으로 상각시키는 신계약비의 이연·상각제도는 불인정하고 있다. 이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수단인 현금흐름할인법에서는 신계약비 지출을 즉시 전액 당기비용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국내보험회계기준 및 보험관행과의 비교

가. 국내보험회계기준과의 비교

국내보험회계기준과 향후 도입이 예정된 국제보험회계기준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보험회계의 적용대상, 보험부채의 평가, 보험료의 수익과 부채의 인식,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 미지급보험금, 신계약비, 보험료결손의 회계처리에 있다. 보험회계의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국내보험회계기준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및 일반 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보험사의 보험계약과 일반 기업의 보험관련 거래를 보험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 수익과 부채 인식에 있어서 국내보험회계기준은 이연매칭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지만, 국제보험회계기준은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판매시점에 인식하게 된다.

<표 II-5> 국제보험 회계기준과의 비교

구분	국내보험회계기준	국제보험회계기준
보험회계 적용대상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및 일반거래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 일반기업의 보험관련 거래
보험부채 평가	- 현재가치를 이용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측정(생명보험)	- 공정가치 또는 기업고유가치 - 손해보험까지 현재가치 평가 확대
보험료 수익, 부채인식	- 이연매칭법 - 보험계약기간에 걸쳐 인식 - 미지급보험금, 미경과보험료, 보험금결손준비금 인식	- 자산부채법 - 판매시점에서 인식 - 미소멸리스크 준비금 인식
보험료 적립금	- 전진법, 소급법도 인정 - 예상보험료는 순보험료 이용 - 초기 기초율을 계속 적용	- 전진법 - 예상보험료는 영업보험료 이용 - 매기 기초율을 갱신 추정
미경과 보험료	-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비용 인식	- 미소멸리스크준비금에 포함
미지급보험금	- 지급준비금과 보험금 미지급금으로 구분하여 계상 - 사고처리비용은 가산하고 구상권 등 회수가능금액은 차감	- 보고된 발생 손해액, 미보고된 발생 손해액, 사고처리비용 포함 - 잔존물 처분 및 구상권 행사에 따른 추정회수금액은 차감 - 미소멸리스크준비금에 포함
신계약비	- 계약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처리 - 1년 이하 단기보험계약은 전액 당기비용 처리	- 장단기 유무와 관계없이 전액 당기비용 인식
보험료 결손	- 예정이율이 장기이자율보다 높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인식	- 부채를 매기 재추정하므로 별도 손실인식이 불필요 - 미소멸리스크준비금에 포함

보험료적립금과 관련하여 국내 보험회계기준은 전진법과 소급법을 모두 인정하지만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전진법만을 인정한다. 예상보험료 산출에 있어서도 국내 보험회계기준은 순보험료를 사용하여 산출하나, 국제보험회계기준은 영업보험료를 사용한다. 또한 초기 기초율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보험료적립금을 평가하는 국내 보험회계기준과는 달리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매기 기초율을 새롭게 추정하여 사용하게 된

다. 즉, 현재의 국내 보험회계기준은 초기 기초율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발행연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경우에는 매 기간 새로 기초율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평가연도법을 사용하게 된다.

신계약비의 경우 국내 보험회계기준은 장기는 계약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처리를 하고, 단기는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반면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장단기 구분없이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 보험회계기준은 예정이율이 장기 이자율보다 높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보험료결손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보험부채를 매기 해당 시점의 기초율로 새롭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손실 인식이 불필요하게 된다.

나. 기존 보험관행과의 비교

국제보험회계기준과 기존 보험관행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목적, 보험부채의 측정, 자산·부채 측정의 연계, 금융자산의 측정, 기초율에 대한 가정, 사용하는 기초율, 고려의 대상이 되는 현금흐름, 이자율 등 시장 기초율, 사망률 등 비시장기초율, 부채평가시 신용등급의 반영, 신계약비, 현재가치 적용, 할인율 등이 있다.

기존 보험관행에 있어서의 목적은 수익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대응시킨 적절한 이익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보험회계기준은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을 통해 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기존 보험관행은 보험부채의 측정에 있어 통상적으로 과거의 거래 누적으로 측정을 하고 미래현금흐름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시에만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표 II-6> 기존 보험관행과의 비교

구분	기존보험관행(이연매칭법)	국제보험회계기준(자산부채법)
목적	- 수익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대응	- 보험계약 자체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
보험부채측정	- 통상 과거의 거래 누적 - 미래현금흐름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시에만 추정이 원칙	- 공정가치 또는 기업고유가치 - 미래현금흐름을 매기마다 추정
자산-부채 측정 연계	- 실무상 혼합되어 있고 투자형 생명보험계약은 연계	- 투자형 생명보험계약만 연계
금융자산측정	- 공정가치와 원가기준 혼용	- 공정가치 측정이 대전제
기초율에 대한 가정	- 장기추세에 암묵적 반영 - 감독규정 고려 - 현재의 최선추정치	-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미래사건의 최선 추정치
사용기초율	- 보험사 자체 기초율	- 시장기초율로서 실제 포트폴리오 특성에 근거
고려대상 현금흐름	- 정상적인 순차적인 청산을 가정할 경우	- 결산보고서일에 부채이전을 가산할 경우의 가격
이자율 등 시장기초율	- 실무상 다양함	- 현재 시장가격 및 다른 시장 추출 데이터와의 일관성 요구
사망률 등 비시장기초율	- 내부 추정치	- 내부추정치 사용하나 시장 참가자들의 일관성 요구
부채평가시 신용등급반영	- 보험료에 암묵적으로 반영	- 개념적으로 반영
신계약비	- 일반적으로 이연	- 당기비용 처리
현재가치적용	- 생명보험에만 적용	- 생존보 모두 적용
할인률	- 실제 또는 명목상 자산의 장기예상수익에 근거하여 추정	- 무위험이자율 : 현금흐름에 리스크 반영시 - 위험조정이자율 : 현금흐름에 리스크 미반영시

반면, 국제보험회계기준은 공정가치 또는 기업고유가치로 측정을 하

고, 미래현금흐름을 매기마다 새로 추정을 하게 된다.

기초율의 가정에 있어서도 기존 보험관행은 장기추세에 암묵적으로 반영하고, 감독규정을 고려하여 현재의 최선추정치를 사용하는 반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경우에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미래사건의 최선추정치를 사용하게 된다.

6. 책임준비금 평가방법 비교

가. 발행연도법

발행연도법에서는 손해액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기에 결정된 기초율을 이용하고 이러한 가정들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 방식은 보험부채를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기초율과 할인율이 초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진법(prospective measurement)은 계약활동의 합계로서 이루어진 소급법(retrospective measurement)과 동일하게 된다. 이 방법에서는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화는 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신계약비를 비롯한 회수 가능한 취득원가는 자산으로 인식되며,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상각하게 된다. 또한 초기에는 수익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로 인해 초기 부채 측정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마진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마진은 보험사에 대해서 리스크를 부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주어지게 되며 보험사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부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식하게 된다.

초기 손실은 부채 적정성 평가에서 계약이 전반적인 손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인식하게 된다. 반면 발행 연도의 불편 추

정치를 이용하며 부채 적정성 평가에서 추가적인 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면 부채는 변하지 않게 된다.

현가 계산시에는 무위험 할인율을 이용하게 되고, 각 보고일에는 부채적정성 검증을 필요로 하며, 계약의 신용특성(credit characteristics)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 측정시에는 자산의 유형에 따른 각 IAS 및 IFRS의 평가기준을 이용하게 되며, 부채가 “손익을 통한 공정가치”로 평가될 때까지는 IAS 39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되며, 경제적 특성과 내재파생상품의 리스크가 주계약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된다.

신계약비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시작하고 판매하며 언더라이팅할 때 보험사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그 회계처리 방법으로는 (a) 특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b) 비용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보험사의 초기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c) 유입가치(entry value) 성격의 초기 보험료로 간주하여 보험부채를 그 진입가치가 차감된 시장가치로 측정하거나, (d) 모두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대해 Insurance Working Group(이하 IWG)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이연신계약비(deferred acquisition cost)에 해당되는 항목은 원가 이연 보다는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계약권리로 보아야 하며,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권리를 회수가능한 취득원가로 설명하고 있다. 만약 계약 권리가 초기에 비용으로 측정된다면 비용은 증분원가(incremental cost)의 성격으로 증분원가는 중개사에 대한 수수료처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갖지 못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의 상각은 임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회수가능한 취득원가는 계약권리로 보아 분리된 자산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회수가능한 취득원가를 상각하는 방식은 보험료 요소의 금액이나 순이익 금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연도법에서 부채의 적정성 검증은 보험부채의 장부상 금액과 미래 현금흐름의 갱신된 추정치를 비교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비교를 통

해 손실이 나타날 경우에는 추정치와 할인율을 갱신하여 현재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을 하며, 수정된 기초율과 이자율은 만기시까지 변화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며, 손해액은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나. 현행유입가치법

현행유입가치법은 보험사 부채를 보험사가 현재의 계약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계약을 취득, 즉 유입할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약속을 해야 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본 방법의 특징은 (a) 보험부채를 계약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을 하고, (b) 주계약과 내재 파생상품을 분리하며, (c) 원가를 회수할 현금흐름은 부채의 감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수 가능한 취득원가를 분리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d) 초기 수익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 부채의 초기 측정치는 명목적·암목적 마진을 포함하게 된다.

초기에 마진은 회수 가능한 취득원가보다 작게 부과된 실제 보험료로 계산되며, 보험사가 계약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스크를 부담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1)리스크의 양과 (2) 리스크당 단위 가격에 대한 추정치가 변화될 때 마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각 보고일마다 갱신된 현재의 불편추정치를 사용하며, 할인율은 현재의 무위험 시장 할인율을 사용하게 된다. 만일 추정치와 할인율이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은 필요하지 않고, 계약의 신용특성은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다. 현행유출가치법

현행유출가치법은 보험부채 측정을 현재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다른 실체에게 이전, 즉 유출될 경우 다른 실체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부채는 유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추정을 통해 측정되게 된다. 이러한 현행유출가치법은 현행유입가치법과 비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현행유출가치법은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는다. 이는 전체 계약에 대한 유출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손익으로 인식되고 전체 계약이 현재의 청산 가격, 즉 유출가치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현행유입가치법은 현재의 현행유입가치가 현재의 현행유출가치와 밀접한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는다.

현행유출가치법은 리스크와 이익에 대해 추정된 시장가치가 보험료에서 명목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내재하는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보험사가 결론을 내릴 경우 초기 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관찰 가능한 시장 데이터가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손익을 인식하는 데 일부 제약이 따르게 되며, IAS 39는 이러한 제약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동일한 경우 손실은 인식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현행유입가치법은 초기 수익에 대한 인식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현행유출가치법은 현행유입가치법과 마찬가지로 계약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과 같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준해서 수입을 인식한다. 이 방법에서 초기 이후의 마진은 시장참여자가 잔존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부채와 권리 및 이와 관계된 리스크에 대해서 요구하는 마진의 불편 추정치이다. 시장 참여자가 요구하는 마진의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 시간에 따라 마진은 변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의 초기 마진은 보험계약자와의 거래가격으로 계산된다. 즉, 현행유입가치법은 시간에 따른 리스크의 양의 변화를 반영하지만, 리스크 단

위당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현행유출가치법은 명시적으로 부채의 신용특성을 반영하는 반면, 현행유입가치법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거나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다. 현행유출가치법은 부채적정성 검증을 포함하지 않으나 현행유입가치법에서는 이러한 검증이 초기에 필요하다.

라. 현재가치 방법 선정에 대한 논란

현재 IASB에서는 부채 평가시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 두 가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유입가치법은 초기에 관찰 가능한 시장 가격의 계산이 가능하지만 현행유출가치법의 마진은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기에 추정을 해야 한다. 이는 주관성, 비용과 변동성을 발생시키며, 현행유출가치법은 과거 검증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실제 현금흐름은 초기에 추정된 마진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 이는 마진이 표준편차의 수와 같은 리스크의 양과 표준편차당 가격과 같은 리스크 단위당 가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년간의 실제 경험치는 리스크 양의 신뢰성 있는 추정은 가능하게 하나 리스크 단위당 가격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보여줄 수는 없다.

또한 현행유입가치법과는 달리 현행유출가치법은 초기 수익을 인식하고 있는데, 초기 수익 인식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계약 초기에 보험계약자에게 효용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며, 경영진이나 언더라이팅 관리자들에게 과도하게 낙관적인 추정치를 만들게 하는 유인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게다가 신뢰성이 결여된 리스크 확인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춘 회사들이 가장 적은 부채와 가장 많은 이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동일한 상품에 대해 관찰 가능한 현재 시장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법과 비교할 때 금융상품에 있어서 공

정가치의 초기 인식에 대한 최선의 증거는 거래가격이라는 IAS 39의 언급과 불일치하게 된다. 또한, FASB에서 연구하고 있는 소비자를 고려한 접근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기업 대 소비자' 접근법과도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현행유출가치법은 IASB와 FASB가 이전에 연구한 '기업 대 기업' 측정방식과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현행유출가치법의 장점으로는 IAS 37에서의 준비금의 취급과 일치하게 되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만일 현재의 현행유입가치가 공정가치와 유사한 내재파생상품의 측정치와 결합된다면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는 현행유입가치법에서도 불필요하게 된다. 현행유입가치법과는 달리, 현행유출가치법에서는 초기에 분리된 부채의 적정성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표 II-7> 부채 평가 방법별 비교

	발행연도법	현행유입가치법	현행유출가치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측정 가능여부	예 (가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결과는 과거법과 동일)	예	예
내재파생상품 분리 의무	예	논란이 있으나 필요 없음	필요 없음
신계약비	이연되어 이익의 인식과 함께 상각됨 분리된 자산이나 준비금의 차감항목으로 나타남	이연되지 않음	이연되지 않음
초기 이익 인식 여부	아니오	아니오	개념적으로는 예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이 있음
초기 손실 인식 여부	예 신계약비가 이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실인식검증을 통해 인식	일반적으로 아니며, 손실인식검증을 통해 결정됨	개념적으로는 예
위험과 이익에 대한 마진	초기 측정시 내재됨 체계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해 시간경과에 따라 인식	초기 측정시 내재됨 체계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해 시간경과에 따라 인식	각각의 보고일에 명확화 됨 보고일과 보고일간 명백한 마진간의 차이를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
추정	편차(bias) 없음 손실이 인식되지 않으면 lock in	편차(bias) 없음 현행	편이(bias) 없음 현행
할인율	무위험이자율 시장이자율 손실이 인식되지 않으면 lock in	무위험이자율 시장이자율 현행	무위험이자율 시장이자율 현행
적정성 검증	예	초기 : 예 위험마진을 포함하여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결정 나중 : 필요 없음	필요 없음
준비금내 신용위험 포함 여부	초기 내재되어 있음 초기 마진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을 통해 해결됨	초기 내재되어 있음 초기 마진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을 통해 해결됨	초기에 명확함

III. 외국의 보험부채 평가제도

국제보험회계기준을 둘러싼 IASB의 논의는 2004년 9월에 설치된 Insurance Working Group에서 검토가 진행되었으나 현재 IASB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있다⁸⁾. 2005년 1월 이사회에 대해 향후 검토 일정이 논의되었으나 Insurance Working Group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는 보험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오히려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이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보험회사들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법의 선택에 대한 문제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IASB의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 도입에 대한 입장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현재 시가평가를 지향하는 주요 3개국인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를 대상으로 시가평가 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IFRS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캐나다

제2장에서도 밝혔듯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방향성은 미래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하는 자산·부채평가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캐나다는 이미 보험부채 평가시 “캐나다식 자산부채평가법”(CALM)⁹⁾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캐나다의 보

8) 2005년 5월에 손해보험관계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사회에 의한 생명보험부채의 평가에 관한 아무런 의사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험부채평가제도에 대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발생하게 될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CALM은 IASB에서 주목하고 있는 보험부채평가제도로 동 제도의 검토는 국제동향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가. 캐나다의 보험부채평가제도의 변천

캐나다 보험부채평가제도의 변천은 크게 4세대로 나누어질 수 있다. 1978년 이전 순보험료식준비금제도를 운영한 1기는 현재 국내 순보험료식준비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제2기는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되어온 "Can78 Method"로 불리우는 방식인데 이는 순보험료식준비금제도가기는 하지만 모든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는 PPM¹⁰⁾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었는데, 이는 영업보험료식 준비금제도로써, 기초율 설정시 PAD¹¹⁾를 설정·운영하며,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과 SAP(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점부터 선진적인 계리적 기법이라 할 수 있는 최적추정치를 근간으로 한 보험부채에 대한 공정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CALM이라 일컬어지는 캐나다방식의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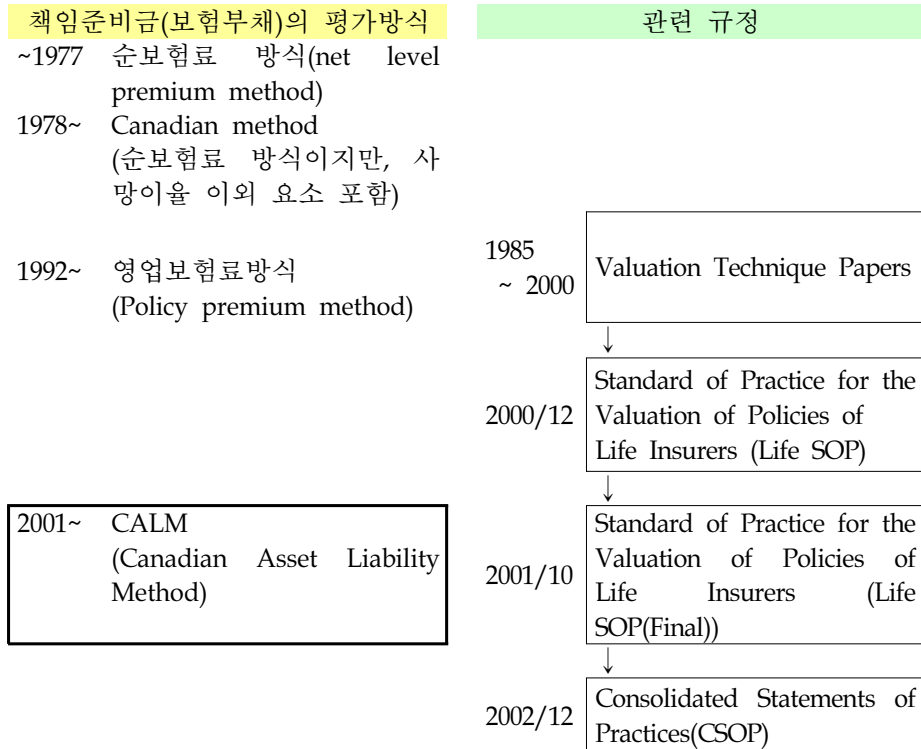
9) CALM : Canadian Asset-Liability Method(캐나다식 자산부채평가법). 캐나다의 CIA(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 캐나다 계리사회)에서 제정하는 "Standards of Practice for the Valuation of Policy Liabilities of Life Insurers"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10) PPM : Policy Premium Method(영업보험료방식 보험부채평가법). 캐나다에서 2002년 이전까지 적용한 방식으로 영국의 영업보험료식 준비금제도와 유사한 형태이다.

11) PAD : Provision for Adverse Deviation(역편차마진준비금). 기초율의 미래 변동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부채평가법을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그림Ⅲ-1>참고).

<그림 Ⅲ-1> 캐나다의 보험부채평가제도의 변천



출처 : 캐나다 공인회계사회(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나. 캐나다의 보험감독규제환경

캐나다의 보험시장 규제는 “Insurance Companies Act(ICA)”에 기초하고 있으며, ICA는 연방법으로서 보험회사의 운영에 대한 통제를 목

적으로 하며,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계 측면에서의 규제는 CICA 및 CIA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CICA는 모든 산업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CIA에서는 보험회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I-1> 캐나다의 보험시장 규제환경

구분	규제 내용
Insurance Companies Act	- 연방법 - 보험회사운영통제 - 보고서 선정 및 C-GAAP 사용 - 선임계리사의 역할 정의
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CICA)	- CICA Handbooks은 C-GAAP을 정의 -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함 - 보험회사에 대한 특별규정 (자산과 계약부채)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CIA)	- Standards of Practice for the valuation of policy liabilities of life insurers 2001.10 - Consolidated Statement of Practices (Life, P&C, Pensions) 2002.12 - Standards for Dynamic Capital Adequacy Testing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수리 실무로서 CIA 재무보고 권고 (Financial Reporting Recommendations of CIA) 및 13가지 문서로 구성된 "Valuation Technique Papers"가 CIA로부터 공표되어 왔다. 그 후, 이를 집약하여 수차례에 걸친 초안 공개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Standard of Practice for the Valuation of Policies of Life Insurers"¹²⁾(이하, Life SOP)로 2001년 10월에 정리되었다. 이 실무 기준은 CALM이라고 명명된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 평가방법으로 2001년

12) Committee on life insuranc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Of Practice For The Valuation Of Policies Of Life Insurers*,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2001. 10.

도부터 적용되었다.

또한, Life SOP는 2002년 12월에 손해보험, 연금 등의 규정과 함께, "Consolidated Statements of Practices(CSOP)¹³⁾"(통합 실무 기준)으로 통합되었다.¹⁴⁾

다. 캐나다의 보험부채평가제도의 주요 내용

캐나다의 보험부채평가제도의 특징으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정에 따라 현금흐름을 분석한 후, 부채현금흐름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기시점 등의 잉여금이 "0"이 되도록 최초자산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부채의 현금흐름에 맞게 자산을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IASB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산·부채법에 가장 유사한 형태인 일종의 현금흐름방식으로 자산과 부채 현금흐름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CALM의 평가방법은 1단계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최선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최선추정에 의한 예측 시나리오로 현금흐름을 추정 한 후, 2단계로 현금흐름가정에 마진을 추가함으로써 이자율 위험을 제외한 PAD를 추가한다. 3단계로 2단계에서 수정된 현금흐름가정에 대한 시나리오 검사를 통하여 이자율 위험에 대한 PAD를 추가하고, 4단계로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는 리스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2, 3단계에서의 PAD를 조정하게 된다.

13) CSOP는 General Standard(일반 원칙)와 3개의 업종별 기준, Insurers, Pension Plans, Public Personal Injury Compensation Plans로 구성되어 있다.

14) CSOP의 제정에 수반해, 기존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CSOP 내용 중에는 CALM를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서 Life SOP도 실질적으로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III-2> CALM 평가방법 순서

평가순서	주요내용
Step1	- 자산·부채 현금흐름에 대한 최선추정 현금흐름가정에 PAD가 포함되지 않은 최선추정치 선택 후, 최선추정에 의한 예측시나리오로 현금흐름 추정
Step2	- 현금흐름가정에 마진을 적용함으로써 이자율 위험을 제외한 PAD추가
Step3	- 2단계에서 수정된 현금흐름가정에 대한 시나리오 검사를 통하여 이자율 위험에 대한 PAD 추가
Step4	-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는 리스크의 특징을 고려하여 2, 3 단계에서의 PAD를 조정 Reproject Assets and Liabilities 배당 등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를 반영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의 평가에 있어 미래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이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선임계리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라. 캐나다의 보험부채평가제도의 특징

캐나다 보험부채평가제도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회계(GAAP)와 감독회계(SAP)가 단일화되어 있다. 캐나다의 감독기구는 감독목적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 일반목적회계기준과 다른 기준을 제시한 사례는 없다.

둘째,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매우 높다.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는 보험회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리실무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만 정의¹⁵⁾

하고 수리실무는 CIA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외부계리사의 감사를 2003년부터 실시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일반회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평가는 선임계리사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다. 다만, OSFI¹⁶⁾는 계리사간 방법의 차이에 따른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일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보험부채에 대하여 세무상 제한이 없다. 즉, 보험회계에서 계상된 부채를 기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부채평가에 따른 변동성 심화예상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 중이다.

넷째, 자산부채평가법 역시 영업보험료식 준비금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역편차마진을 설정하고 있다. 영업보험료 방식을 근간으로 한 자산부채평가법은 신계약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부(-)의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PAD라고 하는 역편차마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장래의 현금흐름 추정시 최선추정에 근거하여 기초율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편차를 마진으로 설정토록 하여 분리운영하고 있다. PAD는 재무제표에 책임준비금에서 분리해 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산 과정에서 분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연구소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시나리오 테스트는 확률론적 테스트와 결정론적 테스트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일본 보험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¹⁷⁾는 캐나다제도에 대한 특징을 회계·계

15) 보험회사법 365조 : 「보험계리사는 사업년도말에 감독국장이 결정하여 변경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수리실무 및 감독국장이 정한 추가 지시에 따라서, 회사의 보험 수리적 및 그 외의 보험계약 채무 등을 평가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16)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 캐나다 연방하의 보험, 은행, 신탁, 대출 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한다.

17) 荻原 邦男(오기와라 쿠니오), “諸外國における生命保險負債評価の変貌(その1)”,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05 Vol.40, NLI Research Institute, 2005. 12.

리적 측면과 보험부채 평가방식에 대하여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표 III-3> 캐나다 제도상의 주요특징

회계·계리적 측면	책임준비금(보험부채) 평가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회계와 재무회계의 단일운영 - 계리사의 독립성이 높음 - 보험부채에 대한 세무상 제한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보험료방식을 채용 - 역편차마진 설정을 명시화 - 금리리스크에 대비하여 시나리오 테스트 채택

마. 캐나다의 보험부채평가제도의 원칙

캐나다 SOP(Standard of Practice for the Valuation of Policies of Life Insurers) 제3장에서는 보험부채평가의 주요 원칙¹⁸⁾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한 원칙들은 기준의 취지, 허용할 만한 일정 범위 존재, 계속기업 기준, 자산과 부채 간의 상호관계 고려,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치 고려, 과도하진 않으나 충분한 수준의 산출, 종합적인 부채 평가 등이다.

이는 기준의 취지를 잘 준수한다면 기준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의미하며, 부채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정확한 측정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허용되는 일정한 범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채의 평가는 계속기업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채의 평가는 자산과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 뒤에 결정되어야 하고¹⁹⁾, 자산과 부채의 명백한 미래현금흐름 분석에 의해서 결정되며,

18) Committee on life insuranc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of Practice for the Valuation of Policies of Life Insurers,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2001. 10. p6 ~ p7

간편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계리사는 현금흐름 분석에 의해서 그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예측가능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유효한 보험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우발채무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고, 계약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치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경험치에 따른 PAD와 예상시나리오에 따른 준비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PAD는 보험부채에 대비하기에 과도하진 않으나 충분하다고 평가되는 적절한 수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보험사는 발생가능한 모든 가정된 위험에 대해 종합적인 적정 부채 평가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바. 캐나다 회계제도의 최근 동향

1) 투자자산의 시가평가제도의 도입

캐나다의 경우 회계제도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의 평가나 공시에 관한 IFRS(IAS 32, 39)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년도부터 강제 적용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며,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이 인정²⁰⁾된다.

생명보험회사의 회계제도의 특징은 CICA Handbook의 3855절 규정에 의하여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IAS 39의 규정을 적용하고, 금융상품 및 자회사관련회사 이외의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생명보험 투자자산은 종전대로 이동평균 시가법에 의해 자산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 자산과 부채는 독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IASB의 보험회계 방향성과는 차이가 있다.

20) 캐나다 공인회계사협회가 발행하는 회계기준 및 가이드스를 모은 Handbook 개정이 2005년 4월 1일에 공표되었다.

2) 투자자산 시가평가 도입에 따른 자산·부채 불일치 논의²¹⁾

주식에 대한 15% rule 및 채권에 대한 상각원가법의 폐지로 인해 자산과 부채에 대한 불일치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그 대응방안으로 캐나다 계리사회에서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응방안은 첫째, 부채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에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둘째, 보험 부채에 대응하는 채권은 만기보유 채권에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셋째, 보험 부채에 대응하는 새로운 자산의 분류를 도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넷째 보험 계약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을 모두 트레이딩 자산에 계상하는 방법이다.

21) 2004년 6월 열린 캐나다 계리사회 세미나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2. 영국

영국에서는 장기보험상품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장기보험부채와 자산의 변동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탄력적 요구자본(Resilience Capital Requirement)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이전에는 탄력적 준비금(Resilience Reserve)이라 하여 부채로 계상토록 하였으나, 2004년 이후 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2004년 이전에는 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방식의 부채평가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는 캐나다의 자산·부채법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즉, 캐나다의 자산·부채법은 부채의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하여도 고려하여 부채를 평가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부채의 현금흐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0~2002년 주식시장의 하락에 따라 자산의 변동에 대한 부채의 변동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2004년 Twin Peaks²²⁾ Approach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산변동과 부채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캐나다의 부채평가에 있어서는 자산의 변동위험을 장기에 걸쳐 평준화 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로 현실적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법정 접근방식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배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유배당 자본항목(WPICC; with-profits insurance capital component)을 설정하여 이익을 이연하게 된다²³⁾.

22) twin peaks는 the regulatory peak와 the realistic peak로 구분된다. 실질 잉여금과 법정잉여금을 구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AS 32, 39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제도의 원칙을 가장 가깝게 준수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회계제도라 할 수 있으며, 보험에 대한 회계의 기본방향인 자산부채법(Asset-Liability Approach)을 가장 가깝게 준수하는 것은 캐나다의 회계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나라의

가. 영국의 보험회계 법규체계

영국의 생명보험회계에 대한 법규체계는 보험회사법 18조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보험계리사에 의한 정기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보험회사법 제18조에서는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에게 조사를 받도록 정의하고 있으며, 선임계리사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생명보험사업에 의한 부채액 평가, 부채를 초과하여야 하는 합당한 자산액의 결정 및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이며, 동 조항에 따라 보험회사규칙에서 부채평가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부채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청(FAS;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서 요구하는 Prudential Source Book(PRU), Consultation Paper(CP) 및 영국보험계리사회 생명보험 위원회에서 제정하는 Guidance Note(GN) 등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표 III-4> 영국의 보험회계 관련 법규체계

구분	법규 내용
Insurance Companies Act	- 생보사의 보험부채평가 및 자본적정성 규제에 관한 근거 제시 - 선임계리사의 역할 등 설명
Prudential Source book (PRU)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서 제정 - 감독회계에 관한 규정
Consultation Paper (CP)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서 제정 - 감독회계에 관한 사항 중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제시
Guidance Note (GN)	- Faculty and Institute of Actuaries(영국 계리사회) - 보험부채평가에 대한 실무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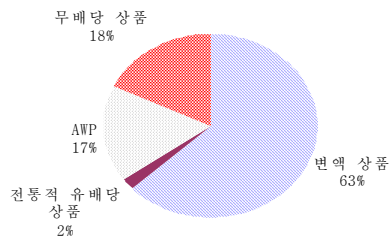
보험부채 평가제도는 향후 제정될 Phase II에 있어서 중요한 사례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 논의도 이에 근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영국의 생명보험시장 환경

1) 저축성상품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영국보험상품은 저축성 상품이 주력이고, 또한 해약환급금이 보증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AWP(Accumulating with-profit)²⁴⁾로 불리는 상품이 주력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상품은 저축의 성격이 강한 상품으로, 이러한 상품이 주력 상품화됨에 따라 투자된 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부채와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III-2> 영국의 생명보험상품 포트폴리오



주 : 2002년 신계약 수입보험료 기준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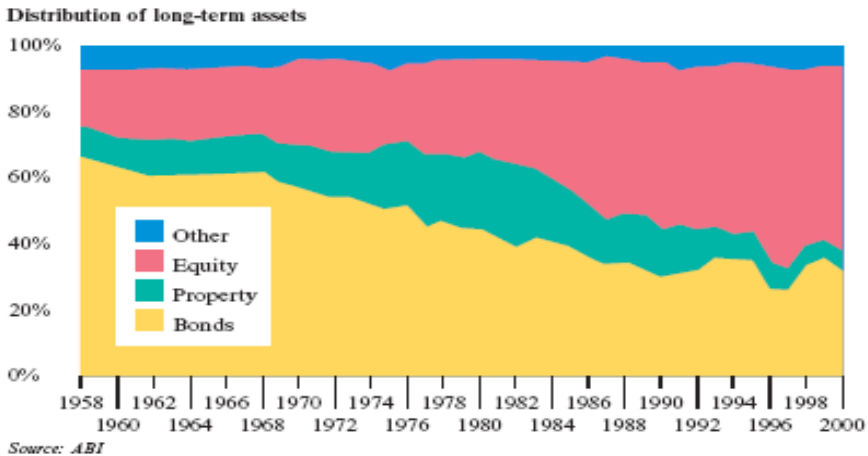
24) AWP는 계약자의 몫이 용이하게 확인가능하고 개인계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수익을 평준화하고 있다. 변액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익을 평준화하는 점에서 전통적 유배당상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25) 유배당 보유계약기준으로도 AWP에 속하는 펀드는 전체 펀드의 57%를 차지한다.

2) 주식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영국에서 생명보험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살펴보면 1958년에는 60%를 상회하던 채권의 비중이 2000년에는 40%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반면 주식의 운용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 영국의 생명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출처 : Howard Froggatt and Icki Iqbal, Smashing With Profits Business, the Staple Inn Actuarial Society, 2002. 10., p7.

주식보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유배당상품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을 장기에 걸쳐 평균화하여 배당으로 돌려주는 형식을 취했으나, 2000년에서 2002년간에 걸친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자산평가와 부채평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에는 감독회계를 Asset-Share라 불리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AWP와 같은 주력상품에서 Asset-Share 방식을 도입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계약자의 몫을 명확하게 하고 해약급부의 기준으로 활용하며, 이를 토대로 부채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다.

다. 영국의 감독회계

FSA에서는 2004년 8월 Consultation Paper 195(CP 195)²⁶⁾에서 Twin Peaks Approach라고 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Twin Peaks Approach 방식은 기존의 법정 책임준비금제도를 유지하면서, EU규제를 만족시키는 현실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는 은행의 Basel II에 의한 자본규제방식에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Twin Peaks Approach의 개요

Twin Peaks Approach의 경우 종전의 법정 기준 외에, 계약의 소멸시 지불하는 배당인 장래 최종 배당 등의 추정 채무까지 고려하여 실제적인 부채 평가를 실시한 후 현실적 자산과 현실적 부채의 차액에 해당하는 실질잉여금인 현실평가를 통한 잉여금과 법정자산과 법정부채와의 차액인 법정잉여금인 종전의 잉여금과의 차이는, 신설 자본 항목인 유배당자본항목(WPICC; with-profits insurance capital component)에 계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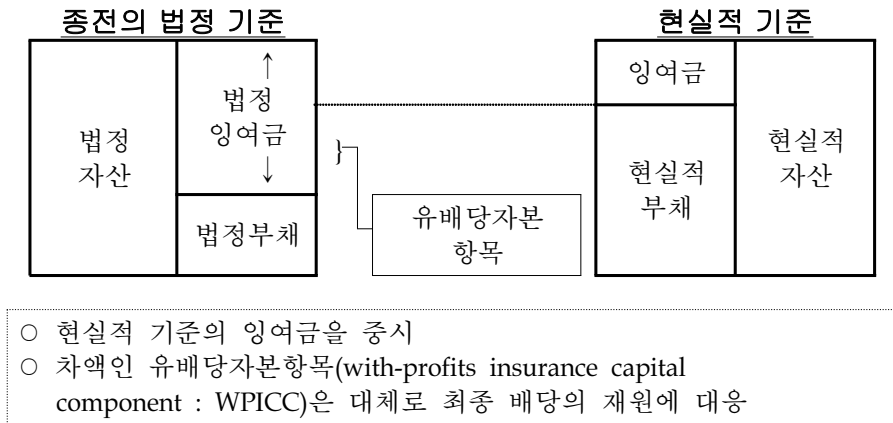
Twin Peaks Approach는 모든 회사가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배당보험 사업을 실시하는 대규모 생명보험회사²⁷⁾에 대해서만 적

26)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Enhanced capital requirements and individual capital assessments for life insurances, 『Consultation Paper 195』, FSA, 2003. 8

27) 유배당부채액이 5억 파운드 이상인 보험회사는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그 미만은 임의 적용할 수 있다. 무배당상품만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용된다.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회사는 종래의 법정준비금 평가 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III-4> Twin Peaks Approach의 개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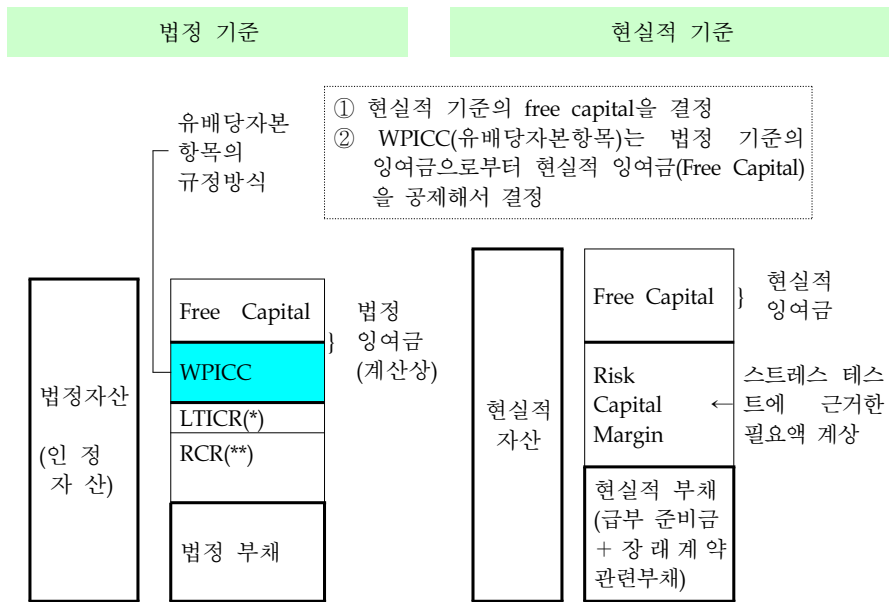
이러한 Twin Peaks Approach의 산출방법은 법정자산에서 법정부채를 차감하고, LTICR²⁸⁾와 RCR²⁹⁾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법정 잉여금을 산출하게 된다. 다음으로 현실적 자산³⁰⁾에서 현실부채³¹⁾와 RCM³²⁾을 차감하여 현실적 잉여금을 구한다. 이후 법정 잉여금에서 현실적 잉여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바로 WPICC에 해당되게 된다. 만일 WPICC가

28) Long Term Insurance Capital Requirement : 현행의 최저 마진과 동일한 개념이다.
 29) 탄력적 요구자본(Resilience Capital Requirement)은 Stress test를 거쳐 산출된 필요 적립금액을 의미한다.
 30) 현실적 자산에는 인용자산을 초과하는 자산을 포함한다.
 31) 일반적으로 Asset-Share 방식에 의해 산출된다.
 32) Resilience Capital Requirement Component의 현실적 기준이다.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이 된다. WPICC는 최종적인 배당을 위한 준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확정되지 않은 배당에 대한 안정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이다.

FSA에서는 WPICC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종 배당이 미확정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확약한 사항이 아니라는 업계의 반대의견에 따라 독립된 자본 요소로 결론지어졌다. 따라서 WPICC는 자본이지만, 부채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림 III-5> Twin Peaks Approach의 개요 2



주 : 1) *는 Long Term Insurance Capital Requirement
 2) **는 Resilience Capital Requirement
 3) WPICC는 부채에 포함할 수 있었지만, 자본으로 취급됨.

① Consultation Paper(CP) 195의 주요 특징

CP195에서의 책임준비금 평가방식에 대한 주요 특징은 Asset-Share 방식인 과거법의 인정, 순보험료방식에서 영업보험료방식으로의 변경, 보증옵션의 적정 평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순보험료 개념은 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순보험료는 영업보험료에서 장래에 배당으로 인해 환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리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된다.

개념상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차감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순보험료가 계상될 수 있는 데 반해 영국은 매년도 순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② 부채평가에 있어서 자산할당(Asset-Share) 적용

순보험료식 장래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자산할당(Asset-Share) 방식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순보험료식 장래법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AWP 상품의 증가에 따른 문제이다. AWP 상품은 과거 투자실적에 근거하여 계약자배당이 변경되는 상품으로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둘째, 장래 배당을 위한 마진 산정시, 보험계리사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부채 계상시 부채에 과도하게 여유분을 감안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 문제이다.

자산할당³³⁾이란, 어느 계약군단(또는 개별계약)의 과거 수입지출에

33) 자산할당(asset-share)는 배당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에도 사용되어 왔다. 90년대에 들어와, 상호회사의 주식회사화로 전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과거 계약자가 남긴 estate의 평가에도 이용되었다. 그러나 AWP가 주력상품화된 이후 asset-share를 이용해 계약자배당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asset-share의 계상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면, 보험료 납입이 자유로운 AWP에서는 계약별 현금흐름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어 개별계약별로 asset-share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군단

따른 투자운용의 수지잔액이며, 자산할당 방식이란, 이것을 계약군단(또는 개별계약)의 부채액으로 계상하는 방식이다. AWP와 같은 상품은 그 시점의 계약자 몫을 정하기 위해서, 또 장래 배당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종래부터 자산할당을 산출해 왔다.

③ 영업보험료 방식의 변경

순보험료 방식의 준비금 산출에 대하여 영국의 FSA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FSA의 금융감독청장 John Tiner은 2003년 연설³⁴⁾에서도 순보험료식에 대하여 "arcane actuarial rule called net premium method"라는 표현을 써 순보험료 방식에 대한 불투명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FSA에서는 순보험료식 공제액 산정부분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보험료방식을 도입하였다.

현재 asset-share를 사용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는 장래법에 따른 순보험료식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asset-share를 사용하여야 하는 AWP와 같은 상품은 영업보험료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현실적 부채의 구체적인 사항 부연

우선 PRU7.4.105R³⁵⁾에서는, 유배당계약의 현실적 부채 평가시 선택하여야 하는 방법과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보험상품에 적합해야 하며, 둘째 적절한 이유가 없는 임의적 변경은 실시하지 않으며 해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셋째 계약자를 공정하게 취급하는 규정상의 의무를 회사가 완수할 수 있는 수준의 동일한 급부를

별 산출의 개념이다.

34) John Tiner(영국 금융감독청장), Current Consultations and the Regulatory Agenda, Westminster & City 20th Anniversary Life Insurance Conference, 2003. 2.

35) PRU는 Prudential Source book을 의미한다. 항목 번호에서 R은 FSA의 규정을 의미하며, G는 계리사회의 지침을 의미한다.

유지하며 이것을 상회하지 않는 요금을 고려하고, 넷째 일반적으로 인정된 수리 실무를 고려하고, 다섯째 회사가 정하는 PPFM³⁶⁾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유배당계약에 관한 현실적 부채는 급부준비금 (benefit reserve)과 장래 계약관련 부채(future policy related liabilities)로 구성된다.

① 급부준비금(benefit reserve)

과거법(asset-share approach)이나 장래법(the bonus reserve valuation approach)중 어느 쪽이든 사용해야 한다(7.4.116R)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법은 일반적으로 자산할당을 이용하고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는 종류의 계약에 적용되며, 그 이외는 장래법이 적용된다³⁷⁾.

과거법은 과거 수입지출의 운용수지를 해당계약(또는 계약군단)의 부채액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부채액으로 배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규정³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 보험료, 비용, 급부, 투자 수입 및 자산가치의 증감, 세금, 재보험 관련 수지, 주주배당, 회사에서 행하는 자산할당의 증감액을 고려하고, 둘째 자산할당은 계약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PPFM에 부합해야 한다.

자산할당은 현재 시점의 계약자 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래의 급부를 충분히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산할당을 가지고 부채를 계상하는 것은 영국 상품이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을 보증³⁹⁾하지 않기 때문이다.

36) Principles and Practices of Financial Management. 「재무 관리에 있어서의 원칙과 실무에 관한 기준서」로 2003년 1월의 CP167에서 제안되었으며, 2004년 3월부터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동 기준서의 내용은 유배당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관리, 이익의 평준화에 관한 사항 및 배당정책 채택에 대한 계약자 공시 등을 담고 있다.

37) 영국 계리사회 지침 노트 GN45의 3.2.1.1에 의한다.

38) PRU 7.4.119R, 7.4.122R

39) 이러한 보증이 존재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과거법이라고 해도 보증과 관계되는 채무액을 별도로 산출해 가산해야 한다. 이 경우는 “장래 계약 관련

자산할당의 장단점에 대하여 David Dullaway and Peter Needleman은 2003년 10월 발표된 논문⁴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만약 자산할당이 거래된다면 매매에 있어 특별한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평균화가 이루어지므로 이것을 즉시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둘째, 자산할당은 계약상의 급부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점은, 자산할당 방식의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히 개인 계좌별 평균화되지 않은 자산할당이 경영 상황의 여하에 관계없이 지불된다고 기대되는 사실상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셋째, 자산할당은 배당 결정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고, 평균화, 과거의 경험치 보다 넓은 군단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양로보험의 배당률을 종신보험의 배당에 사용하는 일도 발생되고 있다. 즉 자산할당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넷째, 자산할당 기법은 말하자면 풋옵션이며, 오히려 현재의 보증액+장래의 재량적 급부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누는 콜옵션을 채용해야 한다. 계약자나 감독 당국에 있어서 알고 싶은 것은 확정된 금액일 것이다.

자산할당기법은 배당 수준의 검증뿐 아니라 급부액의 산정에 이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면서 통일된 기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영국 계리사회를 중심으로 검토가 되었으나, 아직 관련 규정은 개념적인 수준이며, 계산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보험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⁴¹⁾

이 점과 관련하여 guidance note 7.4.126G는 “자산할당의 정의, 산출 방법은 몇 가지 요소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회사의 실무 기준, 회계 시스템의 수준, 보유하고 있는 과거 경험치의 정밀함과 유배당의 자산 구

부채(future policy related liabilities)”에서 계상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40) David Dullaway and Peter Needleman, *Realistic liabilities and risk capital margins for with-profits business*, The Actuarial Profession - making financial sense of the future, the institute of actuaries, 2003. 11.

41) 영국 계리사회가 정하는 가이던스 노트 45(유배당자본 컴퍼넌트)에 Asset Share의 언급이 있지만, 개념적인 설명에 머무르고 있다.

성 등이다. 이로 인해 각사의 자산할당 산출 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과거법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특정 기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규정으로 한 것이다. 7.4.119 R은 “과거법이 지켜야 할 최저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리사 업무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기본적으로 최선추정의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장래의 급부에는 첫째, 사망, 만기시의 보증지불액, 보증하고 있는 해약급부, 납입보험금액, 둘째, 계약자의 권리가 확정 되어있는 확정배당, 셋째, 장래의 연차 배당 및 최종 배당으로 계약자를 공평하게 취급하는 법정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수준 이상의 금액을 포함한다.

즉, 통상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장래의 급부에 포함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를 공평하게 취급한다」⁴²⁾라는 의무에 따라 포함되었다.

<표 III-5>은 영국계리사회에 2003년 11월 24일에 개최된 Sessional meeting에서 발표된 자료 중 과거법과 장래법의 비교 예시이다.

42) 「계약자의 공평한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CP207 “Treating with-profits policyholders fairly” 및 그 개정판인 CP04/14 “Treating with-profits policyholders fairly - Further consultation, feedback on CP207 and near-final text”가 발표되어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III-5> 과거법과 장래법에 의한 현실 부채평가 비교 예시

구분	과거법 (Asset Share Approach)	장래법 (BRV approach)
유배당 급부 준비금	4,698	5,379
향후 공제	(151)	-
미래 계약보증 비용	670	236
미래 재무보증 비용	375	70
미래 평준화 비용	36	(6)
기타 장기 부채	51	-
현실적 부채	5,679	5,679

출처 : David Dullaway and Peter Needleman, Realistic liabilities and risk capital margins for with-profits business, The Actuarial Profession - making financial sense of the future, the institute of actuaries(영국계 리사회), 2003. 11. p13.

② 장래 계약 관련 부채(future policy related liabilities)

장래 계약 관련 부채는 보증부분의 옵션가치 등 급부준비금에 포함되진 않지만 조건부 채무로 존재하는 것을 계상하는 항목이다⁴³⁾. 특히, 자산할당을 이용하여 급부준비금을 산출하는 경우는, 보증, 옵션, 평준화에 관한 부분의 추가를 필수적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4) 법정 준비금 평가(regulatory approach)의 변경사항 부연

① 탄력적 요구자본(Resilience Capital Requirement)의 변경사항

43) PRU의 7.4.137항에서부터 7.4.189항에 규정된다.

탄력적 요구자본은 기존에 탄력적 준비금이라고 하여 부채항목으로 계상이 되었다. 그러나 EU규정에 의거하는 지급여력 규제의 대표적 항목인 「책임준비금의 4%」 항목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중 준비금이라는 비판이 있어 이를 자본 항목으로 옮기게 되었다.

탄력적 요구자본에 대한 Stress Test는 주식의 경우 주식가치의 최소 10% 하락과 FTSE⁴⁴⁾ Actuaries All Share Index 수익률이 장기채권 수익률 $\times 4/3$ 와 동일한 수준이 되는 주식의 시장가치 하락비율(%)과 25% 중 큰 시나리오를 택해 하도록 되어 있다. 이자율의 경우에는 장기채권 수익률의 20%와 동일한 고정이자율증권의 수익률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하여 Stress Test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최소 10%, 최대 20%내에서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전 3회계연도 동안의 부동산 평균지수에 대한 현재의 부동산지수 비율의 증가 시, 더 큰 하락폭을 적용하여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44) FTSE :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Index. Financial Times사와 런던 증권거래소가 1995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 전세계로 투자하는 대형 펀드 중 특히, 유럽계 펀드의 운영에 주요지표를 생성하는 기관이다.

<표 III-6> 탄력적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Stress Test

리스크	스트레스에 대한 규정
주식	“UK주식가치의 최소 10% 하락”과 “아래의 두 가정 중 작은 시나리오”중 큰 쪽을 선정 - FTSE Actuaries All Share Index 수익률이 장기채권 수익률×4/3와 동일한 수준이 되는 주식의 시장가치 하락비율(%) - “25% - 현재의 FTSE Actuaries All Share Index와 최근 90일간의 평균지수의 감소비율(%)” ※ 해외 주식의 경우도 개괄적으로 동일한 테스트 실시
이자율	- 장기채권수익률의 20%와 동일한 고정이자율증권의 수익률 상승 또는 하락(percentage point) ※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하는 국가의 국채수익률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부동산	- 최소 10%, 최대 20%내에서 테스트 실시 - 이전 3회계연도 동안의 부동산 평균지수에 대한 현재의 부동산지수 비율의 증가시, 테스트시 더 큰 하락폭을 적용

② 법정평가만 실시하는 회사의 책임준비금 평가

법정평가만 실시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었는데, 첫째, 책임준비금 계상 시 사용한 전제조건 및 이 전제조건을 사용한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방식의 변경 시 변경사유 및 그 영향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기록보존을 하도록 규정화⁴⁵⁾하였다. 또한, 순보험료식

45) PRU7.3.20 R : A firm must make, and retain for an appropriate period, a record of:

- (1) the methods and assumptions used in establishing its mathematical reserves, including the margins for adverse deviation, and the reasons for their use; and
- (2) the nature of, reasons for, and effect of, any change in approach, including the amount by which the change in approach increases or decreases its mathematical reserves.

준비금을 사용하는 회사를 고려해 PAD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기타 사항으로 평가이율에 대한 사항과 옵션평가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래 현금흐름에 반영하는 평가 이율⁴⁶⁾은 현재 자산, 장래 재투자, 및 장래부채 순현금흐름(net cash flow)이 대상인 장래의 자산운용에 의해 예상되는 리스크 조정수익의 97.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하고, 전체의 리스크 조정 이율은 각 자산 분류의 리스크 조정 이율을 각각의 자산시가 중요도에 따라 평균한 값, 즉 가중 평균한 값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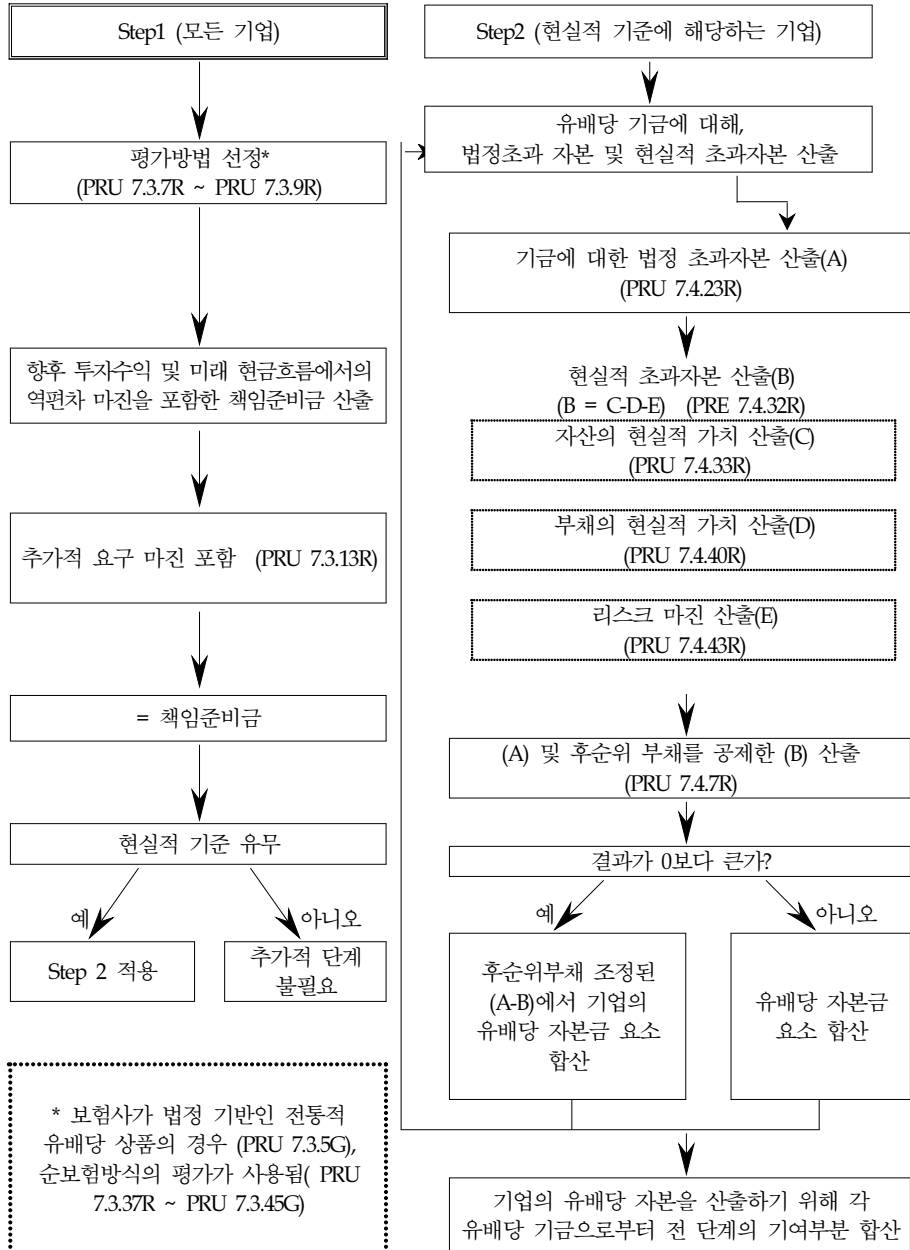
주식의 투자수익이율은 배당이율이 주식이익(earnings yield)을 넘는 경우는 배당이율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두 가지의 평균⁴⁷⁾으로 하게 된다.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 현실 평가와 법적 평가의 상한이 부과되어 있으며, 현실평가는 길드채권의 선도금리(forward rate)를 상한으로 하며, 법적평가는 다음 식(길드채권 이율, 길드채권이 3% 이상인 경우 3%+3% 초과금액의 2/3, 6.5%)에서 산출된 값 중 적은 값을 상한으로 하게 된다.

보험옵션은 만기시 현금수령 또는 보증이율로 연금을 수령하는 옵션과 보증된 기간 중에 다른 계약으로 전환할 권리, 또는 일정한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옵션행사 시 직접적인 영향으로 채무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책임준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해약급부가 보증되는 경우 책임준비금은 어떠한 시점에서든 그 시점에 보증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46) PRU 4.2.28 R ~ 4.2.47 R을 참조.

47) 기존에는 배당 이율의 2배를 상한으로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폐지되었다.

<그림 III-6> 영국의 보험부채평가 업무 흐름도



출처 : FSA, FSA Handbook Release 045, 2005. 8., Annex G1.

3. 호주

호주 생명보험 회계의 특징은 시가 평가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 금융자산을 시가평가 하고 있으며, 부채도 시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와 자산 변동과의 연동성이 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것은 호주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즉, 호주는 Superannuation으로 불리는 개인 계좌방식의 퇴직급여 적립 제도가 크게 발달하여 저축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나라이다. 이 때문에 자산의 시가변동과 함께 부채도 과거법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부채로 계상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장래법으로 부채 평가하는 상품에 대해서 MOS(Margin On Service)라 불리는 순연법에 따른 부채 평가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방법은 장래 이익의 현재가치를 계약 가입 시점에서 평가해, 이것을 그 상품이 제공하는 매년도 서비스의 양에 비례하여 이익이 발생하도록 이익을 연기해 가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순연법」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기준이다. 영연방계의 나라 중에서도 장래법적용 상품에 대해 극단적인 순연법을 채택하고 있는 점도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추가적인 부연설명을 하면, 정기보험 등 전통적 상품에 MOS가 적용되고 있다고는 해도 저축성 상품이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은 작다.

가. 호주 생명보험 부채 평가의 개요

미국이 재무회계(GAAP)와 감독회계(SAP)로 서로 다른 부채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호주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감독회계와 재무회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재무건전성 측정에 초점을 맞춘 감독회계에서는 지급여력 기준과 자본 충분성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다 보수적인 부채평가를 한 재무정보를 추가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감독회계를 재무회계와 차별화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감독회계가 일반적인 재무회계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1) 법규 체제의 개요

호주는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1995, 이하 LIA1995라 함)이 계약자보호를 위한 감독법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 법은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험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제5부, 제6부에서 정하고 있다.

LIA1995에서는 선임계리사의 의무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데 선임계리사에 대해 회사 재정상황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업연도말 재정상황을 조사하고 이사회에 서면 보고하며 그 사본은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하는 APRA에서는 생명보험법에 근거하여 Prudential Rules(이하 PR이라 함) 35 Financial Statement를 관할한다. PR 35에서는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증권거래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된 호주 회계기준 심의회(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는 AASB1038 생명보험 계약⁴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무기준으로는 생명보험 계리기준 심의회(Life Insurance Actuarial Standards Board : 이하, LIASB⁴⁹⁾이라 함)에서 제정하는 Actua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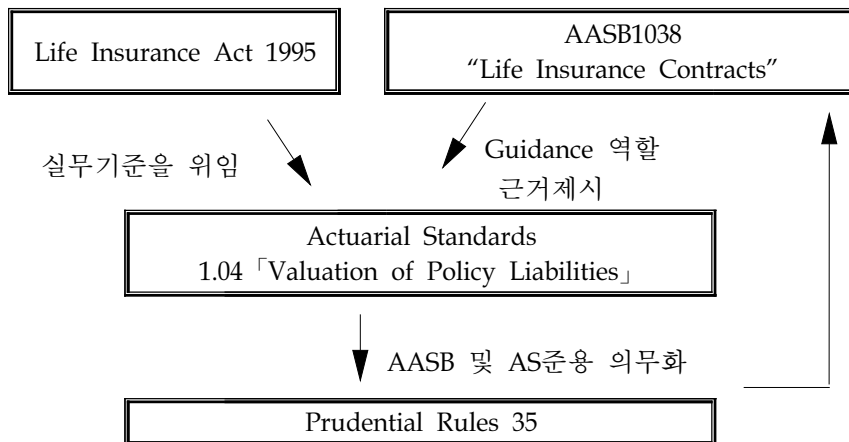
48) 1998년 제정하였으며 2005년 9월 개정시 Life Insurance Business에서 Life Insurance Contracts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49) 생명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로 1995년 7월에 구성되었다.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장, 정부기관인사 1명, 비계리사인 인사 1명, 4명의 계리사로 구성되었다.

Standards(이하 AS라 함)가 있다.

LIA 1995의 제6부 114조 「Method of valuing policy liabilities」에서 “보험부채의 평가는 AS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보험부채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AS에 위임하였다. 또한, AASB 1038 제8장에는 부채평가시 계리실무기준이 Guidance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리실무기준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보험회계 관련 규정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Ⅲ-7>과 같다.

<그림 Ⅲ-7> 보험회계 관련 규정의 관계



2) Margin On Service(MOS)의 개요

AASB 1038 8.1에서는 보험부채평가방법은 과거법과 장래법 어느 한 쪽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래법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적정이율로 할인하는 기법을 말하며, 과거법은 과거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부채액을 정하는 기법으로 자산운용성과를 반영한 계약자

배당을 부채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국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도와 유사한 성격에 해당된다.

MOS 개념의 근간이 되는 장래법은 「최선추정부채」(BEL : Best Estimate Liability)와 「장래이익현가」(PVFP : Present Value of Future Profits)로 구성된다. 최선추정부채란 안전할증이 고려되지 않은 최선추정 예측에 따른 현금흐름에 대해 평가이율로 할인하여 계약부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현금흐름에는 보험급부, 수입보험료는 물론 비용, 계약급부 등 모든 현금흐름을 포함한 이른바 영업보험료식으로 계상하게 된다. 장래이익현가란 미래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 평가액을 의미하며, 장래이익현가를 계상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MOS 기법의 핵심에 해당된다.

장래이익현가는 최선추정에 의한 장래 지출액 시가에서 장래 수입 시가를 차감한 부채평가액에 대해 자산액과 대비한 이익을 산출한 후 해당되는 이익을 장래이익현가로서 부채로 인식한다. 이후 장래이익현가를 매년 적절히 이연하면서 이익으로 계상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적절히 이연하면서 이익으로 계상되는 부분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이익이란 개념에 따라 MOS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이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표로 Profit Carrier(이하 PC)를 정하고 있으며, PC는 결국 수익의 발생원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익은 PC에 비례하여 계상된다.

여기서 서비스 마진은 수익발생원인 서비스 비용의 일정률로 계상하며, AS1.04 SECTION6 Profit Carriers and Profit Margin에서는 이를 (i) 사망 및 장애, (ii) 투자수익, (iii) 신계약비, (iv) 투자운용, (v) 배당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나. 호주의 보험회계 관련 최근 동향

1) IFRS의 적용

호주 회계기준 심의회(AASB)는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도부터 IFRS를 적용하는 것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AASB가 정하는 회계기준도 기본적으로는 IFRS에 기초하여 기준을 정비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AASB가 정하는 기준서는, 원칙적으로 IFRS 4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AASB 4와 같이 IFRS의 기준에 대응하여 규정의 번호를 교부한 체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AASB 4는 보험계약 전반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관해서 각각 선행 기준인 AASB 1038, AASB 1023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수정해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AASB 4의 적용 범위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만족하는 고정 요금의 서비스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어 생명보험 계약에는 종전대로 AASB 1038을 적용하게 된다.

① 금융상품 시가 평가에의 대응

2005년 9월에 채택되어 개정된 AASB 1038 Life Insurance Contracts⁵⁰⁾의 10.2절에 의하면 보험 회사가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IAS 39에 준거한 AASB 139의 범위에 있는 금융자산으로, 생명보험 부채 및 투자계약 부채에 적합한 자산이며, IAS 39로 시가평가가 인정되고 있는 자산은 IAS 39에 의해 시가 평가를 한다. 이것은, IAS 39에서 공정가치 옵션으로 불리는 「모든 자산을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인정하고 있어 이는 종전대로 모든 금융자산을 시가회계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시점에서 이 방침을 채용한 국가는 호주가 유일하다.

전면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개정공개초안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유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IAS39는 상각원가법의 선택을 허락하고 있지만 이 상각원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 상각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호주의 재무보고제도의 후퇴를 의미하기 때문이

50) 적용은 2006년 1월 이후에 개시되는 연도부터 적용이 된다. 다만, 2005년 1월부터의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며, 둘째 공정가치 옵션의 선택은 자산부채 평가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7월 개정된 AASB 1038에서는 다음에 기술할 두 가지 내용인 평가이율의 변경과 공시 강화를 도모하였다.

종전 규정에서 할인이율은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의 운용 결과에 근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자산과 부채를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 IASB 보험계약 프로젝트의 논의 사항을 먼저 반영하여 해당 계약의 급부가 성과(the performance of the assets held)에 연결되지 않는 한 무위험이자율을 이용해 할인 계산을 실시하고, 해당 계약의 급부가 성과에 연동되는 경우 보유 자산의 운용결과에 근거하여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개정판 AASB 1038에서는 과거보다 강화된 공시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제 항목에 대하여 결정 프로세스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장래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에 관한 정보제공, 특히 보험리스크에 관한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민감도 분석을 요구하고 경비의 내역에 관한 공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IASB가 IAS 32의 개정을 위한 ED 7 「금융상품 : 공시」에 대해 본질적으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호주의 생명보험 계약에 관한 기준에서는 이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IV.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의 영향 분석

1. 기본가정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에 따른 영향은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도입으로 인해 책임준비금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보험사 당기순이익의 변동 심화로 인해 신용등급의 하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보험업계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설문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에 따른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의 실질적인 영향 분석을 위해 가상의 신규 보험사 사례를 가정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해당 사례는 책임준비금 평가방법에 따른 영향 요인 극대화를 통한 분석을 위해 최대한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발행연도법(Lock-in approach)⁵¹과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검토 중인 평가연도법(Lock-out approach)⁵²의 일종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재무제표를 산출하였다.

51) 발행연도법(Lock-in approach)은 초기의 기초율을 책임준비금 평가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준비금 평가에 있어 발행연도법을 사용하고 있다.

52) 평가연도법(Lock-out approach)은 매 회계연도말 최선의 추정에 의해 새로 기초율을 산정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공정가액 평가를 하게 된다. 현재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현행유입가치법(Current entry value approach)과 현행유출가치법(Current exit value approach) 중 한가지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책임준비금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영향 분석을 위해 만기 5년인 정기보험만을 취급하는 단종의 신규 회사를 가정하고, 보험료는 매년도 초에 납입하고, 보험금은 12월에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외에 별도의 유지비용은 없는 것을 가정하고, 계약당 신계약비는 1,000원, 계약자 수는 1,000명으로 가정하였으며, 연간 보험료는 2,536.⁵⁵ 원, 보험금 지급금액은 100,000원으로 가정하였다. 이외에 자산운용수익률인 추정 투자수익률은 10%로, 무위험이자율은 9%를 가정하였다.

연간 추정사망률은 초기 추정은 1차년도는 1.00%, 2차년도는 1.40%, 3차년도는 2.00%, 4차년도는 2.80%, 5차년도는 4.00%를 가정하였으며, 실제 보험상품 가격 산출시에는 연간 추정사망률을 20% 할증하여 각각 1.20%, 1.68%, 2.40%, 3.36%, 4.80%로 반영하였다. 다음에는 사례 분석 및 추정과 재무제표 산출에 사용된 제 가정에 대해 요약하였다.

- 회사는 만기 5년인 정기보험만을 취급하는 신규 회사
- 보험료는 매년도 초에 납입하고, 보험금은 12월에 지급
- 유지비용은 없음
- 계약자 수 : 1,000명
- 계약당 신계약비 : 1,000원
- 보험금 : 100,000원
- 추정 투자수익률 : 10%
- 무위험이자율 : 9%
- 연간 보험료 : 2,526.55원
- 연간 추정 사망률

<표 IV-1> 연간 추정 사망률 가정

	x1	x2	x3	x4	x5
초기 추정	1.00%	1.40%	2.00%	2.80%	4.00%
가격 산정시(20% 할증)	1.20%	1.68%	2.40%	3.36%	4.80%

또한, 보험료 가격 산정에 이용된 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사망자와 생존자의 인원수를 구하면 1차년도에는 12명이 사망하여 2차년도에 생존자는 988명이 되었고, 2차년도에는 17명, 3차년도에는 23명, 4차년도에는 32명, 5차년도에는 44명이 사망하여 만기시에는 872명이 생존하였다.

<표 IV-2> 가격 산정시 사용한 생존자, 사망자 수

	x1	x2	x3	x4	x5	계
기초	1,000	988	971	948	916	1,000
사망	-12	-17	-23	-32	-44	-128
만기						-872
기말	988	971	948	916	872	-

가. 당기순이익 분석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신계약비의 이연상각으로 인해 초기 이익이 다른 방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계약의 후반부로 갈수록 신계약비의 이연처리에 따른 상각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다른 회계처리 방법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 현행유입가치법의 경우에는 신계약비의 당기비용 처리로 인해 x1년도의 당기순이익이 199,627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는 X5년도에는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을 보여주게 된다.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현행유입가치법과 같이 신계약비를 당기에 비용처리를 하나 초기 이익인식을 하기 때문에 초기이윤 74,498원의 인식으로 인해 현행유입가치법보다 x1년도 당기순이익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상품 판매에 따른 초기이윤을 1차년도에 모두 인식하였기에 x2년도부터는 현행유입가치법에 의해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것보다 낮게 나타나게 된다. 즉, 현행유출가치법에서는 상품 판매시점에서 상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즉시 인식을 하지만, 현행유입가치법에서는 상품판매시점에서 상품판매에 따른 이익을 인식하지 않고 상품계약기간동안 기간의 경과에 따라 나누어 인식하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주요한 영업수익 중 하나가 보험료 수익이지만, 평가연도법의 일종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익이 아닌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환입이 주요한 영업수익의 근간이 된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는 이연매칭법과 새로 도입이 예정된 자산부채법의 수익의 인식차이에 따른 것이다.

<표 IV-3> 기본가정 당기순이익 요약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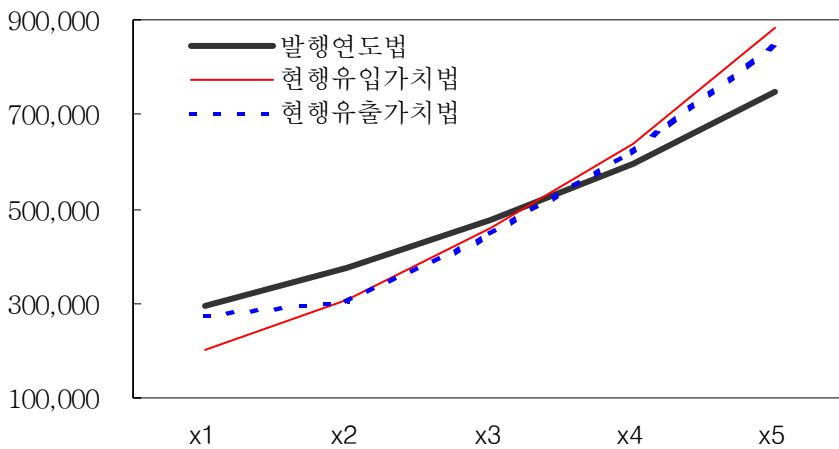
	x1	x2	x3	x4	x5
발행연도법	292,611	373,712	478,703	596,957	747,803
현행유입가치법	199,627	307,878	460,044	639,219	883,019
현행유출가치법	271,468	301,237	447,188	618,653	851,240

나. 그래프 분석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산출된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회계처리방법별, 연도별로 그래프를 이용하여 비교하면 신계약비의 이연상각으로 인해 1차년도의 경우 발행연도법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고, 반면 신계약비를 초년도에 모두 상각하는 현행유입가치법의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초기 이익의 인식으로 인해 초기 이익 금액만큼 현행유입가치법 대비 높게 당기순이익이 산출되었다. 반면 계약기간의 종료에 가까워질수록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이 새로 도입되는 회계처리방법 대비 이익유연화의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적게 나타내게 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의 도입은 보험사의 이익변동성을 심화시켜 보험사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를 낮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림 IV-1> 기본가정 그래프



2. 사망률 악화시

이번 장에서는 보험계약 기간 중에 사망률이 악화되었을 경우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고 비교하기 위하여 3차년도에 사망률이 10% 상승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즉, 3차년도부터는 실제 사망률을 초기 추정대비 각각 10% 상승한 2.20%, 3.08%, 4.4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초기 추정 사망률, 가격 산출에 사용된 실제 사용 사망률, 그리고 실제 사망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사망률 악화 가정

(단위 : 원)

	x1	x2	x3	x4	x5
초기 추정	1.00%	1.40%	2.00%	2.80%	4.00%
가격 산정시(20% 할증)	1.20%	1.68%	2.40%	3.36%	4.80%
실제사망률	1.00%	1.40%	2.20%	3.08%	4.40%

가. 당기순이익 분석

현재 사용 중인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은 새로 도입되는 회계처리방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 대비 이익유연화(income smoothing)의 경향이 있다. 기본가정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연도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발행연도법 대비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보험료 산출에 사용된 기초예정율이 변동될 경우 기존 회계처리방법 대비 극대화되게 된다. 이 사례에서는 사망률이 악화된 3차년도에 발행

연도법의 경우에는 378,703원의 당기순이익을 인식하였으나, 평가연도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은 각각 265,492원과 273,478원의 당기순손실을 인식하였다. 이는 평가연도법에서는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를 통해 악화된 사망률에 따른 손실을 해당연도말에 모두 인식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의 도입은 보험사의 이익변동성을 심화시켜 보험사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를 낮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표 IV-5> 사망률 악화시 당기순이익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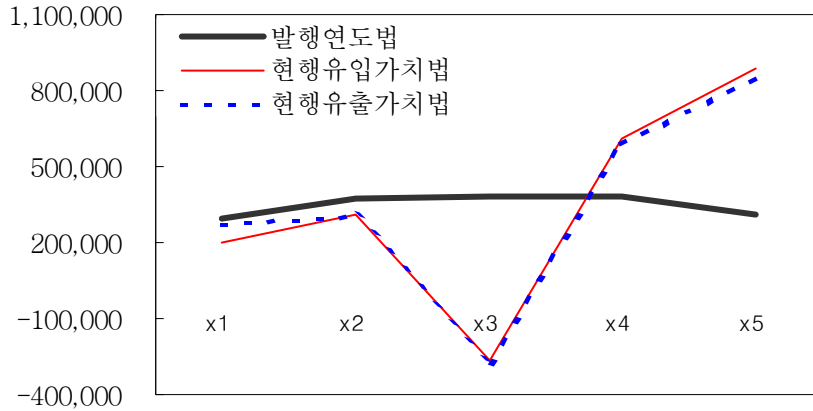
(단위 : 원)

	x1	x2	x3	x4	x5
발행연도법	292,611	373,712	378,703	384,178	308,188
현행유입가치법	199,627	307,878	-265,492	609,768	885,611
현행유출가치법	271,468	301,237	-273,478	587,768	850,397

나. 그래프 분석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산출된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회계처리 방법별, 연도별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3차년도에 사망률이 악화된 경우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기초 제가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익의 변화가 사망자 수의 증가에 따른 보험금의 증가, 보험료의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자수익의 감소에 따른 당기 순이익의 감소만 나타내기에 완만한 그래프를 보이게 된다. 반면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사망률 악화에 따른 변화분을 일시에 인식하게 되어 3차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게 된다.

<그림 IV-2> 사망률 악화시 그래프



3. 사망률 개선시

보험계약 기간 중에 사망률이 개선되었을 경우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고 비교하기 위하여 3차 년도에 사망률이 10% 하락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즉, 3차 년도부터는 실제 사망률을 초기 추정대비 각각 10% 하락한 1.80%, 2.52%, 3.6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초기 추정 사망률, 가격 산출에 사용된 실제 사용 사망률, 그리고 실제 사망률을 정리하면 <표 IV-6>과 같다.

<표 IV-6> 사망률 개선 가정

	x1	x2	x3	x4	x5
초기 추정	1.00%	1.40%	2.00%	2.80%	4.00%
가격 산정시(20% 할증)	1.20%	1.68%	2.40%	3.36%	4.80%
실제사망률	1.00%	1.40%	1.80%	2.52%	3.60%

가. 당기순이익 분석

기초 가정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는 발행연도 법과는 달리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가정을 사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하는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개선된 3차년도에 책임준비금을 변경된 사망률을 사용하여 시가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3차년도에 678,703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발행연도법보다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져서 각각 1,301,714원과 1,283,918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표 IV-7> 사망률 개선시 당기순이익 요약

(단위 : 원)

	x1	x2	x3	x4	x5
발행연도법	292,611	373,712	678,703	922,516	1,114,255
현행유입가치법	199,627	307,878	1,301,714	661,711	910,867
현행유출가치법	271,468	301,237	1,283,918	643,509	881,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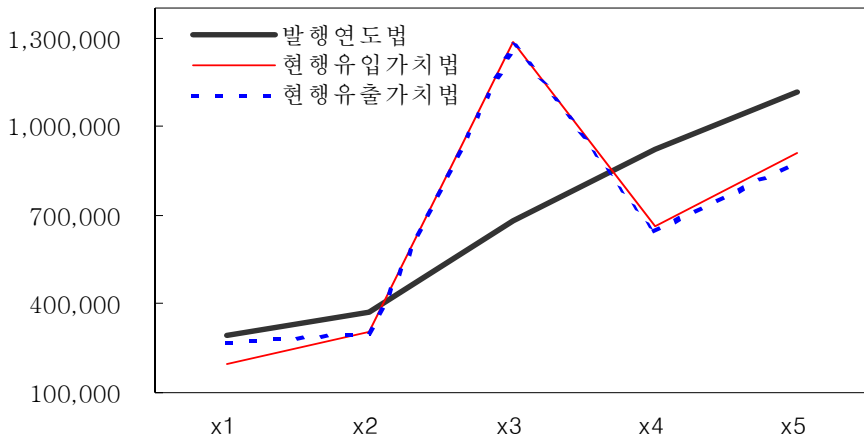
나. 그래프 분석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산출된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회계처리방법별, 연도별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3차년도에 사망률이 개선된 경우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기초 제가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익의 변화가 사망자 수의 감소에 따른 보험금의 감소, 보험료의 증

가,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자수익의 증가에 따른 당기 순이익의 증가만을 반영하기에 완만한 그래프를 보이게 된다. 반면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사망률 개선에 따른 변화분을 일시에 인식하게 되어 3차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이 새로 도입되는 회계처리방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 대비 이익유연화의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적게 나타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 가정의 변동은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할 경우 변동성이 기존 회계처리방법 대비 극대화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의 도입은 보험사의 이익변동성을 심화시켜 보험사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를 낮게 할 수도 있다.

<그림 IV-3> 사망률 개선시 그래프



4. 이자율 하락시

이번 장에서는 보험계약 기간 중에 이자율이 하락하였을 경우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비교하기 위하여 2차년도 말에 이자율이 각각 2% 하락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가. 당기순이익 분석

기초 가정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는 발행연도법과는 달리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가정을 사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하는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하락한 2차년도 말에 책임준비금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시가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2차년도에 373,712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발행연도법과는 달리 이자율 하락에 따른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과 이자수익 감소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각각 196,511원과 192,522원에 불과 하였다. 그러나, 2차년도 이후에는 시간이 지날 수록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IV-8> 이자율 하락시 당기순이익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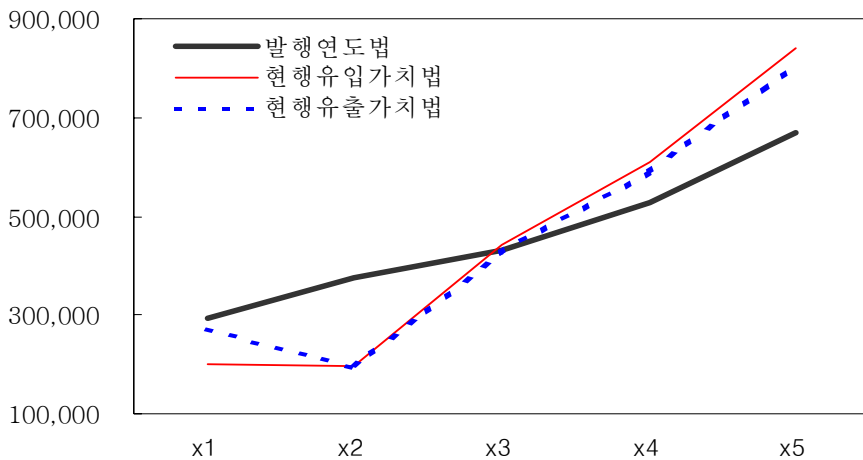
(단위 : 원)

	x1	x2	x3	x4	x5
발행연도법	292,611	373,712	429,385	526,257	667,631
현행유입가치법	199,627	196,511	443,179	611,147	839,130
현행유출가치법	271,468	192,522	429,206	589,642	806,758

나. 그래프 분석

이자율 하락시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산출된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회계처리방법별, 연도별로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그림 IV-4> 와 같다. 2차년도 말에 이자율이 하락한 경우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기초 제가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익의 감소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감소만 나타내기에 완만한 그래프를 보이게 된다. 반면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이자율 하락에 따른 변화분을 일시에 인식하게 되어 책임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하여 2차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게 된다.

<그림 IV-4> 이자율 하락시 그래프



이는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이 새로 도입되는 회계처리 방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 대비 이익유연화의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적게 나타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 가정의 변동은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할 경우 변동성이 기존 회계처리방법 대비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앞의 결과와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5. 이자율 상승시

이번 장에서는 보험계약 기간 중에 이자율이 상승하였을 경우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비교하기 위하여 2차년도 말에 이자율이 각각 2% 상승하는 것을 가정하여 각각의 재무제표를 산출하였다.

가. 당기순이익 분석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발행연도법은 기초 가정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지만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도입할 예정인 평가연도법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가정을 사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승한 2차년도 말에 책임준비금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시가평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2차년도에 373,712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발행연도법과는 달리 이자율 상승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액의 감소와 이자수익 증가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각각 411,500원과 402,370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3차년도와 4차년도 평가연도법의 경우에는 2차년도에 이자율 상승에 따른 수익을 이미 인식하였기에 오히려 발행연도법 대비 낮게 나타났다.

<표 IV-9> 이자율 상승시 당기순이익 요약

(단위 : 원)

	x1	x2	x3	x4	x5
발행연도법	292,611	373,712	528,021	669,631	833,013
현행유입가치법	199,627	411,500	480,584	672,012	933,264
현행유출가치법	271,468	402,370	468,759	652,332	902,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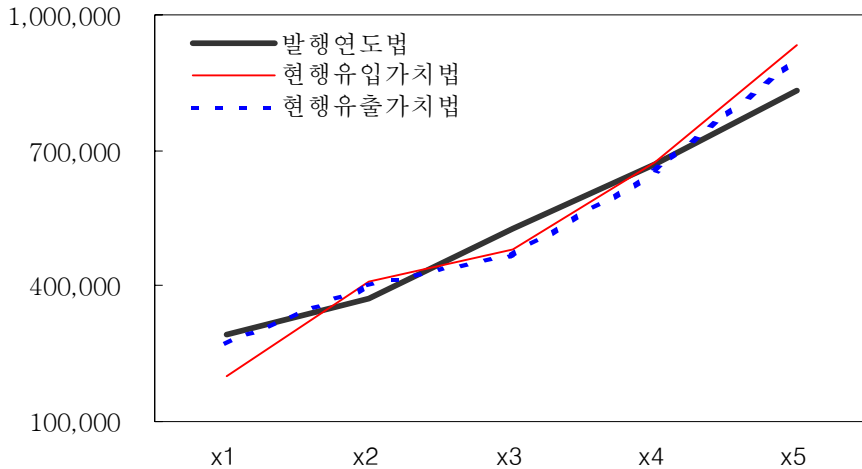
나. 그래프 분석

이자율 상승시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산출된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회계처리방법별, 연도별로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그림IV-5>와 같다. 2차년도 말에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기초 제가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당기 이자수익의 증가분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완만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반면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 평가연도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변화분을 이자율 상승시 회계연도말에 일시에 인식하게 되어 2차년도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이 새로 도입되는 회계처리방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 대비 이익유연화의 경향이 있으며,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크게 나타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제가정이 변동되는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림 IV-5> 이자율 상승시 그래프



6. 분석에 따른 시사점

기존에 사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인 발행연도법 대비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평가연도방식 회계처리방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의 평가방법에 따른 차이이다. 즉,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판매시 제기초율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지만,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채택할 예정인 평가연도법의 일종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은 매 회계연도말 최선추정에 의해 제기초율을 새롭게 산정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기존에는 이연매칭법을 통해 보험상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상품의 보험기간동안에 걸쳐 나누어 인식을 하였으나,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자산부채법에 의해 매 회계연도말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화액만큼을 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는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신계약비의 이연자산화를 통한 비용의 이연처리가 가능하지만,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도입이 예정된 평가연도법은 신계약비의 이연자산화를 통한 이연처리도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평가연도법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 기존에 사용되는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 대비 이익의 변동폭이 커지게 되며, 이러한 경향은 책임준비금의 산출에 사용된 제가정 및 기초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는 국제보험회계기준 하에서는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을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초율의 변경에 따른 변화를 전액 손익으로 반영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손익 변동폭의 확대에 의해 보험업계에서는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보험부채의 공정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떤 회계처리 방법이 해당 보험사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를 감안한다면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으로 인해 해당 보험상품의 판매에 따른 보험사의 손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단지 이익의 기간 배분에 관한 문제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V.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1.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금융의 국제화 및 금융권역간의 융합을 비롯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가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통한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은 정보의 적시성과 유용성, 그리고 목적적합성 제고를 위해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있어 현행가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보험업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보험회계의 추진시 많은 보험사들의 반대로 인해 보험업의 경우에는 단계적 추진을 결정하여 우선 1단계에 해당되는 국제재무보고기준인 IFRS 4를 2004년 3월 공표하였다. 그리고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 논점에 대한 Discussion Paper는 2007년 3월에 발간될 예정이며,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은 2010년 발표될 예정이다.

보험업의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보험사들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많은 반대를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보험업 또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2005년 EU 국가들의 경우에는 EU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미국 재무회계기준(US GAAP)을 사용하는 기업과 채무증권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회계기준인 US GAAP 사이에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Convergence Program을 서로 간의 합의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

로 전망된다.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부채의 시가평가이다. 현재 보험사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은 상품 판매시의 기초율을 계약기간 만기시까지 적용하는 발행연도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매 회계연도말에 해당 회계연도말의 기초율을 사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재평가하게 된다. 이 경우 기초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은 바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기에 당기순이익 변동폭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손익변동폭의 확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화는 보험사들의 경영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 재무제표의 변동성 증대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되어 보험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예정 기초율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의 변동액을 매 결산기마다 평가하여 인식한 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자산부채법의 적용으로 보험부채의 공정가액 변동액은 바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뿐 아니라 손익계산서의 변동성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재무제표의 변동성 증대 요인은 대차대조표의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 만기 구조의 불일치, 부채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조정 부분으로 인해 발생된다.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되는 발행연도 방식과는 달리 평가연도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부채의 공정가액의 변동액을 손익으로 직접 인식하기에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국내 자본시장처럼 10년 이상 장기투자자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변동성 증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 자본 조달 비용의 상승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시가 평가 및 자산 부채법의 적용은 보험사들의 손익 변동폭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투자자산의 평가손익은 물론 보험부채의 미실현 추정 손익까지 당기순이익에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신계약비의 당기 비용처리로 인해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에서 보여주는 이익의 유연화 현상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된다.

공정가치회계에서 공정가치의 변동은 이익 및 자본의 변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기간별 변동은 금융자산의 시장가치 또는 추정 시장가치와 보험부채의 추정시장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에는 많은 가정과 변수들이 있기에 이익의 예측과 추정은 현재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 손익을 포함하는 당기순이익이 현금흐름과 직결되지 않음에 따라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배당정책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성장률이 동일한 기업의 경우 이익의 변동성이 높은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리스크 마진을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조달비용이 불가피한 자본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보험사들의 자본조달비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보험사의 자본조달시 자본조달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원가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으며, 대체리스크 전가나 자가보험(self-insurance)과 같은 대체상품의 존재로 인해 이러한 원가상승의 전가가 쉽지 않기에 경제 전체적으로 보험공급능력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다. 투자형/단기 상품의 확대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특히 생명보험에서는 주요 상품에서 투자형 상품이나 단기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산운용에 따른 영향을 보험사가 부담하기보다는 계약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지고, 기간이 길수록 제 가정의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보험상품에서 제공하는 옵션 및 보증비용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익의 변동성을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부 상품에 대한 유인을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종목인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에 대한 판매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손익계산서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하고, 보험기간의 축소를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자 하는 유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비상위험준비금 등 부가적인 준비금 적립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의 시장전가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커져서 재무제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재해리스크의 인수나 금융재보험의 활동의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단기 위주의 자산 운용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이자율 변동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기 위해 장기보다는 단기 위주의 자산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지분 투자에서 채권 투자로 투자의 중심축이 옮겨 가고, 다시 채권 투자에 있어서도 만기가

짧은 채권에 대한 비중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변동성에 따르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단기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보수적인 투자와 낮은 수익률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위와 같은 자산운용의 변화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보험상품도 자산-부채 대응을 위해 만기가 짧아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주식투자에 대한 제약이 커지고 이에 따라 단기 채권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명보험과는 달리 별도의 이자율 보증이 없기에 단기 채권으로의 전환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 위험 관리 개념의 변화 불가피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가 도입되면 위험관리활동은 원가중심점에서 이익중심점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보험부채의 평가시 원가법을 적용하면 개별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역량은 재무제표상에 수치화되어 나타나지 않는 반면, 공정가액 평가에서는 지급여력비율 및 손익의 변동성 등을 통해 위험관리역량이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표시되게 된다. 따라서 보험부채 평가시 원가법을 사용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위험관리능력을 보험상품 선택시의 주요 판단요소로 사용하지 않지만, 공정가액 평가시에는 주요 판단요소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위기관리능력 및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이익중심점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은 위에서도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들과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부채의 공정가액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은 보험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준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실행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응방안은 크게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인식의 전환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환경 및 회계관행은 커다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진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진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즉, 국내외 자본시장을 둘러싼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영 패러다임 변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을 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측가능하도록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즉, 정책당국의 사전 예고 및 향후 계획의 제시는 문제점을 사전

에 보완할 수 있어 성공적 정책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기에 정책당국에서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적용 대상,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 시기,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수용 방법과 형태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한 내용과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및 지식 수준을 높이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국가 투명성 제고 및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행사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 포석이 필요하며, 국제보험회계기준 제정 과정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도입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영향과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보험가격 산출체계의 선진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산출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현재 국내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산출체계는 3이원방식에 의해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자율, 위험률, 사업비율에 의해서 보험료가 결정되는 체계이다. 그러나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3이원 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로는 보험부채의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보험요율산출체계는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현금흐름방식의 요율산출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상품개발업무가 회사 전체의 경영목표, 전략 등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행해진

다. 또한, 현금흐름방식의 적용에 있어서는 기초율뿐만 아니라 유지율, 판매규모, 옵션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목표이익의 설정에 따른 각 부서별 목표 성과 달성이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이 된다.

과거에 사용하던 3이원방식에 의해서는 보수적 예정기초율 책정을 통해 주로 사업비율을 조정하여 이익을 실현했으나, 현금흐름방식하에서는 목표이익 부여 및 인수, 수당이나 투자계획을 비롯한 최선추정치의 조정을 통해 손익을 달성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3이원방식의 요율 산출체계에서는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가 투자부서, 영업부서 등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금흐름방식의 요율산출체계로 전환하게 되면 상품개발부서와 타 부서간의 업무에 있어서 보다 유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현금흐름방식 요율산출체계로의 전환의 필요성은 기존 3이원 방식의 요율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3이원 외의 다양한 환경변수의 증가로 인해 적정손익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현금흐름방식의 종합적인 요율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 시스템 구축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향후 보험업계에서는 적절한 시장환경 시나리오를 계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보험회사의 주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도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최선추정을 위한 미래예측, 즉 시장환경 시나리오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계리적 관점은 계산(Calculating)의 개념에서 추정(Estimating)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추정의 개념에서 계리 과학의 발

전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서 계리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계리적인 산출중심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추정 개념에서의 계리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투자분석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부서별 책임경영 체계 도입을 위해 상품개발, 운영에 대하여 전사가 합의한 의사결정 및 부서별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미래의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최선추정치 설정을 위한 체계적인 경험데이터 관리 및 객관적인 미래 예측이 중요하다. 이에 더해 체계적인 경험 데이터 관리를 위해 현재의 복잡한 상품 및 손익 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가격산출매뉴얼(Pricing Manual)을 마련하여 상품개발 절차, 최선추정치 설정, PAD 설정, 원가분석에 따른 사업비 책정, 집행 및 배분기준 등에 대해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가격산출매뉴얼의 작성은 초기 보험사들의 경험부족으로 인해 시행상의 곤란함이 있기에 감독기관을 비롯한 보험유관기관에서의 가격산출매뉴얼지침(Pricing Manual Guideline)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계리 전문가의 양성 및 자율적인 계리업무 권한의 인정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계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리 전문가들의 역량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계리 및 회계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 및 교육을 통해 역량의 향상 및 능력을 높이고,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계리 및 회계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미 국제보험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EU의 상장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크를 통해 도입과정에서의 혼란 및 문제점

들에 대해 연구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리 및 회계 전문 인력들의 EU 상장보험사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 역량을 배양하고, 계리법인들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한 경험 및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계리업무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고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즉, 선임계리사의 경우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 등 단순확인 업무를 탈피하고, 전문적 판단에 따른 준비금의 충분성 등에 대해 경영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매우 높으며,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는 보험회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리실무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수리실무는 캐나다 계리사회인 CIA(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외부계리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반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는 받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부채는 선임계리사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으며, 다만 계리사 간의 방법의 차이로 인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OSFI(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에서 통일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임계리사에 대한 독립성 및 권한의 인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독립성 및 권한의 인정을 통해 선임계리사들이 단순 업무를 벗어나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하여 보험부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선임계리사들에 의한 자의적인 보험부채 평가와 선임계리사에 따른 지나친 편차를 막기 위해 보험부채에 대한 통일된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선임계리사들의 보험부채 판단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실시하는 방향의 제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마. 계리제도의 개선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 최소화와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책임준비금의 개념 변경, 책임준비금 제도의 개선, 해약환급금 제도의 개선, 계약자배당 제도의 개선과 같은 계리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63조에 의하면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책임준비금의 개념을 보험료적립금은 계약자의 채권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준비금 또는 보험계약의 가치의 개념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개별 계약건별 계산방식에서 유사위험별/보험상품별 통합준비금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상품별 유지율 등 다양한 가정을 반영하여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발행년도법 방식으로 결정되는 책임준비금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 가정 및 기초율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핵심 내용인 부채의 공정가치(fair value) 평가에 대비하여 보험료, 보험금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포함하여 미래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는 영업보험료방식의 책임준비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도 계약자의 잔여지분의 지급 개념에서 급부의 지급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계약자에게 현금지급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급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옵션이나 보증 등의 경우에도 급부로 인식하여 가격산출을 하고,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표준해약환급금의 경우에도 최저 해약환급금 수준 이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약급부의 지급이 가능한 최저 해약환급금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감독 방향의 전환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방향에 있어서도 상품 개발 및 보험 요율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최소화하고, 상품별 개요나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선임계리사의 자율 검증 기능을 부여하고, 직접적인 요율통제 업무 대신 해약환급금 규정 준수, 준비금의 충분성, 일관된 가정설정 여부 등을 검증하는 상품심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품심사제도의 개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반기나 연단위의 주기적인 검사시 준비금의 충분성에 대한 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 약관 및 공시서류 등에 대한 사전적인 심사는 강화하고, 보험 약관과 실제 상품 설계의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며, 표시 광고 규정 위반 여부 및 약관 등에 대하여 계약자의 이해가능성 위주의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Policy Illustration Law나 Contract Readability Test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공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보험 경영 및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원분석기준 및 보고, 예정 사업비 계상 및 실제 사업비 배분 기준과 같은 기준 및 보고서를 정비하고, 최선추정치 설정, 검증 및 준비금의 충분성 검증과 같은 선임계리사 연간보고서의 보고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인 공시보다는 개별 계약자의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액보험 투자형 상품의 투자원금 공개, 보험 안내 자료의 제공을 비롯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에 관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 제도적 장치의 마련

국내 보험시장에 있어서 계리업무능력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미래예측 모델에 대한 감독당국에서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금리시나리오에 대해 규정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미래 시장환경예측에 대한 규정된 모델을 개발 제시하고, 독자적인 계리시스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계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계리시스템의 연구를 통해 도와주고,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회사의 보험경영 관련 규제면에서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자율적 계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일정요건을 규정화하여 보험부채 평가시 보험부채에 대한 과소 적립이나, 과대 적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감독체계에 있어서도 리스크 감독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방향이 보수적인 보험부채평가제도가 아닌 최선추정에 의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방식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자본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선진 외국사례와 같이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예측에 대한 최선추정이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자산·자본의 적정성분석 도입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부채평가의 자율성 증대로 직접적인 감독방식보다는 공시강화를 통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VI. 결론

2005년부터 EU 상장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고, 엔론사태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의 주도권이 미국 재무회계심의위원회(FASB)에서 국제회계기준심의위원회(IASB)로 넘어가고 있으며, FASB와 IASB 간의 기준 차이에 대한 조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이 2008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최근 도입 여부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 및 적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상의 보험회사를 설정하여 기존에 사용되는 회계처리 방법인 발행연도법과 향후 도입이 예정된 평가연도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 두 가지에 의해 각각의 재무제표를 산출하여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황적 분석을 위해 기본 가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주요한 두 가지 기초율인 사망률과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재무제표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기초 가정이 상품의 만기시까지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 사망률이 악화되는 경우, 사망률이 개선되는 경우,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의 5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이 보험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초 가정이 상품 만기시까지 지속되는 기본 가정의 경우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의 경우 신계약비의 이연상각으로 인해 초

기 이익이 다른 방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계약의 후반부로 갈수록 당기순이익이 다른 회계처리 방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신계약비의 당기 비용처리로 인해 현행유입가치법이 x1년도의 당기순이익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초기 이익 인식으로 인해 x1년도의 당기순이익이 현행유입가치법보다 높게 나타났다.

추정에 사용된 기초율이 변경된 경우인 사망률 악화, 사망률 개선, 이자율 하락, 이자율 상승의 경우에는 기초 가정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는 발행연도법과는 달리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기초율들을 사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하게 된다.

사망률이 악화 또는 개선된 경우 발행연도법은 기초 제 가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익의 변화가 사망자 수의 증감에 따른 보험금의 증감, 보험료의 증감,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자수익의 증감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증가만을 반영하기에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 반면 매 회계연도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사망률 악화 또는 개선에 따른 변화분을 일시에 인식하게 되어 당기순이익이 급감 또는 급증하였다.

이자율이 하락한 경우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은 기초율이 변경된 해에 이자율 하락에 따른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과 이자수익 감소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발행연도법 대비 급감하였으며, 반면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액의 감소와 이자수익 증가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의 경우 이익변동폭이 새로 도입되는 회계처리방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 대비 작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 가정 및 기초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더욱 극대화되는데 이는 새로 도입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경우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도입하고 있기에 매 회계연도말에 보험부채의 평가를 통해 변동액을 직접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행연도법의 이러한 이익유연화 경향과 새로이 도입되는 평가연도법인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의 이익변동폭 확대 때문에 보험사들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업계는 재무제표의 변동성 증대, 이익변동성 증대에 따른 자본 조달 비용의 상승, 투자형/단기 상품의 확대, 단기 위주의 자산 운용, 위험관리 개념 변화와 같은 영향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영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며, 이에 더해 보험업계는 보험가격 산출체계의 선진화, 시장 환경 시나리오의 적절한 예측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계리 전문가의 양성, 리스크 감독체계의 구축, 자율적인 계리 업무의 권한 인정, 계리시스템에 대한 요건 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적정성 분석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상의 보험회사를 가정하고,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해 기본 가정과 기초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을 하였으며,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 극대화를 위해 모형을 단순화하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보다 정교한 모형을 가지고 다양한 변수들을 적용하여 모든 상황에 대해 분석을 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의 도입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이러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 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 및 준비를 통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이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참고 문헌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의 보험료결손 예상시 회계처리업무 모범규준”, 2003. 4.
- , “해석적용사례 2003-5 보험료결손 예상시의 회계처리”, 2003. 4.
-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국제재무보고기준서』, 2005. 2.
-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회계해설서』, 2002. 1.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보험회계제도연구』, 연구보고서 96-5,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7.
- 김호중,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생명보험회계제도 개선방안”, 보험개발연구 제3호 통권 제25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8. 10.
- 손성동, 최용석, 문성훈,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삼성금융연구소, 2003. 4.
- 이유문, “책임준비금 평가”, 『Fy2005 제2차 실무자과정 - 보수교육자료』, 한국보험계리사회, 2005. 10.
- 오창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결손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72집 '05-12, 보험학회, 2005. 12.
- , “자산할당방법을 이용한 보험료산출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71집 '05-08, 보험학회, 2005. 8.
- · 정홍주, 『저금리시대의 생명보험업 발전방안』 제1권 : 금융시스템과 생명보험업,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5. 8.
- · -----, 『저금리시대의 생명보험업 발전방안』 제2권 : 주요국 생명보험업의 저금리 대응사례,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5. 8.
- · -----, 『저금리시대의 생명보험업 발전방안』 제3권 : 저금리에 대응한 생명보험업 경영/제도/감독 방향,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5. 8.
- 한국보험계리사회, 『보험회사의 국제적 지급여력 평가체계』, 2006. 4.

- AMP, *full annual report 05*, AMP limited., 2006.
- APRA, *Life Insurance Trends September 2005*, APRA, 2006. 2.
- Barry J. Epstein and Abbas Ali Mirza, *WILEY IFRS 2006* , John Wiley @Sons,Ltd. 2006.
- Committee on life insuranc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of Practice for the Valuation of Policies of Life Insurers*,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2001. 10.
- David Dullaway and Peter Needleman, *Realistic liabilities and risk capital margins for with-profits business*, The Acturial Profession - making financial sense of the future, the institute of actuaries, 2003. 11.
- Dickinson G. and Riedtke P, *Impact of a Fair Value Reporting System on Insurance Companies: A Survey*, Geneva Association, 2004.
- European Central Bank, "*Fair Value Accounting and Financial Stability*", Occasional Paper Series No. 13, April 2004.
-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Enhanced capital requirements and individual capital assessments for life insurances*, 『Consultation Paper195』 , FSA, 2003. 8
- , *FSA Handbook Release 045*, FSA, 2005. 8.
- Gerard de Martiniere, *New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surance*, The Geneva Papers, 2005.3. pp.108-113.
- Gerd Hausler, *The Insurance Industry, Systemic Financial Stability, and Fair Value Accounting*,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 29 No.1(January 2004), pp.63-70.
- Gery Dickinson and Patrick M. Liedtke, *Impact of a Fair Value Financial Reporting System on Insurance Companies: a Survey*,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 29 No.1(January 2004), pp.540-581.

- Howard Froggatt and Icki Iqbal, *Smashing With Profits Business*,
the Staple Inn Actuarial Society, 2002. 10.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Draft Statement of Principles
: Insurance Contracts*", 2001.
- James J. Schiro, *Proposed Changes in Insurance Accounting Rule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 29
No.1(January 2004), pp.75-77.
- John Tiner, *Current Consultations and the Regulatory Agenda*,
Westminster & City 20th Anniversary Life Insurance Conference,
2003. 2.
- Jonathan Bloomer, *Impact of Insurance Accounting on Business
Reality and financial Stability*,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 29 No.1(January 2004), pp.56-62.
- Knut Holthfeld, *Current Priorities in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in
Insurance Supervision*,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 29 No.1(January 2004), pp.78-86.
- Lothar Meyer, *The Impact of Insurance Accounting on Business
Reality and Financial Stability*,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 29 No.1(January 2004), pp.72-74.
- 萩原 邦男, "諸外國における生命保険負債評価の変貌(その1)",
『ニッセイ基礎研究所報 2005 Vol.40』, NLI Research Institute,
2005. 12.
- 萩原 邦男, "諸外國における生命保険負債評価の変貌(その2)",
『ニッセイ基礎研究所報 2006 Vol.41』, NLI Research Institute,
2006. 4.

[부록]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사례분석

1. 기본가정

가. 발행연도법 사용시

1) 대차대조표

기존 회계처리 방법의 경우 신계약비의 이연처리를 인정하고 있기에 초기 신계약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보험기간인 5년간에 걸쳐 상각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각의 회계연도에 신계약비를 174,174원, 187,208원, 200,358원, 213,107원, 225,154원을 상각하여 5년차 대차대조표에는 신계약비가 완전히 상각되어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끝나는 x5년말에는 책임준비금도 모두 소멸되어 대차대조표에는 유가증권과 이익잉여금만이 나타나게 된다.

<별표 1-1> 기본 가정 발행연도법 적용 대차대조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유가증권	679,206	2,098,541	3,020,901	3,279,913	2,489,787
신계약비	825,826	638,618	438,260	225,154	-
자산총계	1,505,033	2,737,160	3,459,161	3,505,066	2,489,787
책임준비금	1,212,422	2,070,837	2,314,136	1,763,083	-
이익잉여금	292,611	666,323	1,145,026	1,741,983	2,489,787
부채와 자본총계	1,505,033	2,737,160	3,459,161	3,505,066	2,489,787

2) 손익계산서

동사의 영업수익의 경우 기존 회계 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에서는 크게 보험료 수익과 이자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료 수익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사망에 따른 납입금액의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이자수익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누적에 따른 유가증권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동사의 영업수익은 x1년에는 2,679,206원에서 x5년에는 2,909,874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동사의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보험금비용, 책임준비금 전입액, 신계약비 상각비로 구성된다. 보험금비용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증가로 인해 x1년 1,000,000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x5년에는 3,700,000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책임준비금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후반기에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발행연도법의 경우에는 신계약비의 이연상각으로 인해 향후 도입이 예정된 다른 방법에 비해 초기 이익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별표 1-2> 기본 가정 발행연도법 적용 손익계산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영업수익	2,679,206	2,819,335	2,922,360	2,959,011	2,909,874
보험료수익	2,526,551	2,501,286	2,465,914	2,415,383	2,347,166
이자수익	152,655	318,049	456,446	543,628	562,708
영업비용	2,386,595	2,445,623	2,443,657	2,362,054	2,162,071
보험금비용	1,000,000	1,400,000	2,000,000	2,700,000	3,700,000
책임준비금 전입액	1,212,422	858,415	243,299	-551,053	-1,763,083
신계약비 상각비	174,174	187,208	200,358	213,107	225,154
당기순이익	292,611	373,712	478,703	596,957	747,803

나. 현행유입가치법 사용시

1) 대차대조표

현행유입가치법의 경우 신계약비의 이연상각이 인정되지 않고 단기에 전액 비용처리되기에 발행연도법과는 달리 대차대조표에 신계약비 항목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x5년 대차대조표에는 발행연도법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과 이익잉여금만이 나타나게 된다. 즉,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은 해당 기업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이익의 귀속기간 내지는 이익의 배분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별표 1-3> 기본가정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유가증권	679,206	2,098,541	3,020,901	3,279,913	2,489,787
자산총계	679,206	2,098,541	3,020,901	3,279,913	2,489,787
책임준비금	479,579	1,591,036	2,053,352	1,673,145	-
이익잉여금	199,627	507,505	967,549	1,606,768	2,489,787
부채와 자본 총계	679,206	2,098,541	3,020,901	3,279,913	2,489,787

2) 손익계산서

현행유입가치법의 경우에는 신계약비의 이연상각을 인정하지 않기에 초기에 신계약비 전액을 비용으로 상각하여 발행연도법 대비 당기순이익의 규모가 적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주된 영업수익이 보험료 수익과 이자수익인 발행연도법과는 달리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환입과 이자수익이 주요한 수익을 구성하게 된다.

<별표 1-4> 기본가정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초기 이윤	0				
책임준비금 환입	184,362	258,107	368,724	497,777	682,139
순 이자	15,266	49,771	91,320	141,442	200,880
이자수익	152,655	318,049	456,446	543,628	562,708
마진 차감전 준비금 이자	-5,352	-140,949	-249,567	-309,413	-305,505
마진에 대한 이자	-132,038	-127,329	-115,559	-92,774	-56,323
순이익	199,627	307,878	460,044	639,219	883,019

다. 현행유출가치법 사용시**1) 대차대조표**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도 신계약비의 이연상각이 인정되지 않고 단기에 전액 비용처리되기에 발행연도법과는 달리 대차대조표에 신계약비 항목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x5년 대차대조표에는 발행연도법이나 현행유입가치법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과 이익잉여금만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이 해당 기업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이익의 귀속기간 내지는 이익의 배분에 관련된 것임을 의미한다.

보험료의 납입에 따라 자산 규모가 증가하게 되며, 유가증권은 1차년도말 679,207원에서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5차년도말에는 2,489,787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책임준비금의 경우에도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5차년도말에는 0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익잉여금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5차년도말에는 2,489,787원으로 증가하였다.

<별표 1-5> 기본가정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유가증권	679,207	2,098,542	3,020,901	3,279,913	2,489,787
자산총계	679,207	2,098,542	3,020,901	3,279,913	2,489,787
책임준비금	407,738	1,525,836	2,001,008	1,641,366	-
이익잉여금	271,468	572,705	1,019,893	1,638,547	2,489,787
부채와 자본 총계	679,207	2,098,542	3,020,901	3,279,913	2,489,787

2) 손익계산서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현행유입가치법과는 달리 상품 판매시에 상품 판매로 인한 초기 이익을 인식하기에 1차년도에 초기 이윤 74,498원이 인식이 되며, 이로 인해 초기 이윤에 해당되는 만큼 현행유입가치법 대비 책임준비금 환입액이 적어지게 된다.

즉, 상품 판매시의 마진과 시장에서 요구되는 마진과의 차이를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는 초기에 인식하여 수익으로 실현을 하나, 현행유입가치법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나누어 설정된 책임준비금의 환입을 통해 인식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유입가치법과 현행유출가치법과의 책임준비금 환입 총액은 초기 이윤만큼 현행유입가치법이 많게 된다.

책임준비금 환입의 경우 1차년도에는 175,000원, 2차년도에는 245,000원, 3차년도에는 350,000원, 4차년도에는 472,500원, 5차년도에는 647,500원이 이루어졌다.

<별표 1-6> 기본가정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초기 이윤	74,498				
책임준비금 환입	175,000	245,000	350,000	472,500	647,500
순 이자	21,970	56,237	97,188	146,153	203,740
이자수익	152,655	318,049	456,446	543,628	562,708
마진 차감전 준비금 이자	-5,352	-140,949	-249,567	-309,413	-305,505
마진에 대한 이자	-125,333	-120,863	-109,691	-88,063	-53,463
순이익	271,468	301,237	447,188	618,653	851,240

2. 사망률 악화시

가. 발행연도법 사용시

1) 대차대조표

3년차에 사망률이 악화된 경우 발행연도법에 의해 산출된 대차대조표는 기본 가정의 경우와는 달리 사망률이 악화된 3차년도부터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기본 가정대비 감소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시의 이익잉여금이 기본 가정의 2,489,787원 대비 752,395원이 감소된 1,737,392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당기순이익 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인해 유가증권의 규모도 감소되었다.

기본가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5차년도말에는 유가증권과 이익잉여금만이 남았으며,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해당 보험계약의 인수로 인해 발생한 동사 이익의 누적금액을 의미한다.

<별표 2-1> 사망률 악화시 발행연도법 적용 대차대조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유가증권	679,206	2,098,541	2,920,901	2,967,133	1,737,392
신계약비	825,826	638,618	438,260	225,154	-
자산총계	1,505,033	2,737,160	3,359,161	3,192,287	1,737,392
책임준비금	1,212,422	2,070,837	2,314,136	1,763,083	-
이익잉여금	292,611	666,323	1,045,026	1,429,204	1,737,392
부채와 자본 총계	1,505,033	2,737,160	3,359,161	3,192,287	1,737,392

2) 손익계산서

사망률이 3년차부터 악화됨에 따라 사망자 수의 증가로 보험료 수익이 감소되었으며, 보험금비용의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감소됨에 따라 투자자산인 유가증권이 감소하여 이자수익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누적효과로 인해 기간이 경과될수록 당기순이익의 감소폭이 증가하였다.

<별표 2-2> 사망률 악화시 발행연도법 적용 손익계산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영업수익	2,679,206	2,819,335	2,922,360	2,946,232	2,870,258
보험료수익	2,526,551	2,501,286	2,465,914	2,412,856	2,339,587
이자수익	152,655	318,049	456,446	533,376	530,672
영업비용	2,386,595	2,445,623	2,543,657	2,562,054	2,562,071
보험금비용	1,000,000	1,400,000	2,100,000	2,900,000	4,100,000
책임준비금 전입액	1,212,422	858,415	243,299	-551,053	-1,763,083
신계약비 상각비	174,174	187,208	200,358	213,107	225,154
당기순이익	292,611	373,712	378,703	384,178	308,188

나. 현행유입가치법 사용시

1) 대차대조표

현행유입가치법의 경우 매 회계연도말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사망률이 3차년도에 악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변화된 제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여 반영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행유입가치법에 의할 경우 3차년도에 사망률이 악화됨에 따라 향후 추가적으로 적립이 필요한 책임준비금을 일시에 적립하게 된다. 이로 인해 책임준비금이 2차년도에 1,591,036원에서 3차년도에는 2,678,133원으로 1,087,097원이 일시에 증가하였다.

<별표 2-3> 사망률 악화시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유가증권	679,206	2,098,541	2,920,901	2,967,133	1,737,392
자산총계	679,206	2,098,541	2,920,901	2,967,133	1,737,392
책임준비금	479,579	1,591,036	2,678,888	2,115,352	-
이익잉여금	199,627	507,505	242,013	851,781	1,737,392
부채와 자본 총계	679,206	2,098,541	2,920,901	2,967,133	1,737,392

2) 손익계산서

현행유입가치법에 의한 당기순이익의 경우 발행연도법을 적용한 경우와는 달리 사망률 악화에 따른 영향이 일시에 반영되어, 사망률 추정이 변경된 3차년도에는 오히려 265,492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이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에 따른 것으로 회계연도말 평가시점에서의 제가정을 사용하여 매 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을 산정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초기 이윤을 인식하는 현행유출가치법과는 달리 초기 이윤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초기 이윤 인식을 하지 않았다.

<별표 2-4> 사망률 악화시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초기 이윤	0				
책임준비금 환입	184,362	258,107	368,724	534,649	755,883
추정의 변화			-725,534		
순적립금의 변화			-629,639		
마진의 변화			-95,897		
순 이자	15,266	49,771	91,320	75,119	129,727
이자수익	152,655	318,049	456,446	533,376	530,672
준비금에 대한 이자	-5,352	-140,949	-249,567	-356,853	-338,532
마진에 대한 이자	-132,038	-127,329	-115,559	-101,404	-62,412
순이익	199,627	307,878	-265,492	609,768	885,611

다. 현행유출가치법 사용시**1) 대차대조표**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 현행유입가치법과 동일하게 매 회계연도말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사망률이 3차년도에 악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변화된 제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여 반영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행유출가치법에 의할 경우 3차년도에 사망률이 악화됨에 따라 향후 추가적으로 적립이 필요한 책임준비금을 일시에 적립하게 된다. 이로 인해 책임준비금이 2차년도에 1,525,836원에서 3차년도에는 2,621,674원으로 1,095,838원이 일시에 증가하였다.

또한, 유가증권은 1차년도말 679,207원에서 보험료의 지속적인 납입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5차년도말에는 1,737,392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익잉여금의 경우에는 1차년도말 271,468원에서 2차년도말에는 572,705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사망률 악화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으로 인해 3차년도말에는 오히려 299,227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5차년도말에는 1,737,392원으로 증가하였다.

<별표 2-5> 사망률 악화시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유가증권	679,207	2,098,542	2,920,901	2,967,133	1,737,392
자산총계	679,207	2,098,542	2,920,901	2,967,133	1,737,392
책임준비금	407,738	1,525,836	2,621,674	2,080,138	-
이익잉여금	271,468	572,705	299,227	886,995	1,737,392
부채와 자본 총계	679,207	2,098,542	2,920,901	2,967,133	1,737,392

2) 손익계산서

현행유출가치법에 의한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도 기본 가정의 경우와는 달리 사망률 악화에 따른 영향이 일시에 반영되어, 사망률 추정이 변경된 3차년도에는 오히려 273,478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이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에 따른 것으로 회계연도말 평가시점에서 제가정을 사용하여 매 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을 산정함에 따른 것이다. 현행유입가치법과의 차이점은 초기 이윤 74,498원을 현행유출가치법에서는 인식하지만 현행유입가치법에서는 인식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별표 2-6> 사망률 악화시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초기 이윤	74,498				
책임준비금 환입	175,000	245,000	350,000	507,500	717,500
추정의 변화					
순적립금의 변화			-629,639		
마진의 변화			-91,028		
순이자	21,970	56,237	97,188	80,268	132,897
이자수익	152,655	318,049	456,446	533,376	530,672
준비금에 대한 이자	-5,352	-140,949	-249,567	-356,853	-338,532
마진에 대한 이자	-125,333	-120,863	-109,691	-96,255	-59,243
순이익	271,468	301,237	-273,478	587,768	850,397

3. 사망률 개선시

가. 발행연도법 사용시

1) 대차대조표

3년차에 사망률이 개선된 경우 발행연도법에 의해 산출된 대차대조표는 기본 가정의 경우와는 달리 사망률이 개선된 3차년도부터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기본 가정대비 증가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시의 이익잉여금이 기본 가정의 2,489,787원 대비 892,010원이 증가한 3,381,797원에 이르렀다. 또한,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증가에 힘입어 유가증권의 규모도 증가하였다.

기본가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5차년도말에는 유가증권과 이익잉여금만이 남았으며,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해당 보험계약의 인수로 인해 발생한 동사 이익의 누적금액을 의미한다.

<별표 3-1> 사망률 개선 발행연도법 적용 대차대조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유가증권	679,206	2,098,541	3,220,901	3,805,471	3,381,797
신계약비	825,826	638,618	438,260	225,154	-
자산총계	1,505,033	2,737,160	3,659,161	4,030,625	3,381,797
책임준비금	1,212,422	2,070,837	2,314,136	1,763,083	-
이익잉여금	292,611	666,323	1,345,026	2,267,542	3,381,797
부채와 자본 총계	1,505,033	2,737,160	3,659,161	4,030,625	3,381,797

2) 손익계산서

사망률이 3년차부터 개선됨에 따라 사망자 수의 감소로 보험료 수익이 증가되고, 보험금비용의 감소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의 규모도 증가하고 투자자산인 유가증권이 증가하여 이자수익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누적효과로 인해 기간이 경과될수록 당기순이익의 증가폭이 커졌다.

<별표 3-2> 사망률 개선시 발행연도법 적용 손익계산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영업수익	2,679,206	2,819,335	2,922,360	2,984,570	2,976,326
보험료수익	2,526,551	2,501,286	2,465,914	2,420,436	2,359,799
이자수익	152,655	318,049	456,446	564,134	616,527
영업비용	2,386,595	2,445,623	2,243,657	2,062,054	1,862,071
보험금비용	1,000,000	1,400,000	1,800,000	2,400,000	3,400,000
책임준비금 전입액	1,212,422	858,415	243,299	-551,053	-1,763,083
신계약비 상각비	174,174	187,208	200,358	213,107	225,154
당기순이익	292,611	373,712	678,703	922,516	1,114,255

나. 현행유입가치법 사용시

1) 대차대조표

현행유입가치법의 경우 매 회계연도말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사망률이 3차년도에 개선되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변화된 제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여 반영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행유입가치법에 의한 경우 3차년도에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 금액의 감소로 인해 오히려 책임준비금의 환입이 일어났다. 사망률이 개선된 3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책임준비금이 1,591,036원에서 1,411,682원으로 179,354원이 감소하였다.

유가증권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차년도에는 679,206원에서 5차년도에는 3,381,797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익잉여금은 1차년도에는 199,627원에 불과하였으나, 사망률의 개선이 이루어진 3차년도에는 1,809,219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별표 3-3> 사망률 개선시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유가증권	679,206	2,098,541	3,220,901	3,805,471	3,381,797
자산총계	679,206	2,098,541	3,220,901	3,805,471	3,381,797
책임준비금	479,579	1,591,036	1,411,682	1,334,541	-
이익잉여금	199,627	507,505	1,809,219	2,470,930	3,381,797
부채와 자본 총계	679,206	2,098,541	3,220,901	3,805,471	3,381,797

2) 손익계산서

현행유입가치법에 의한 당기순이익의 경우 기본 가정의 경우와는 달리 사망률 개선에 따른 영향이 일시에 반영되어, 사망률 추정이 변경된 3차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301,714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에 따른 것으로 회계연도말 평가시점에서의 제가정을 사용하여 매 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을 산정함에 따른 것으로 순적립금의 변화 744,376원과 마진의 변화 97,294원에 힘입은 것이다.

<별표 3-4> 사망률 개선시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초기 이윤	0				
책임준비금 환입	184,362	258,107	368,724	442,468	626,830
추정의 변화			841,670		
순적립금의 변화			744,376		
마진의 변화			97,294		
순 이자	15,266	49,771	91,320	219,243	284,036
이자수익	152,655	318,049	456,446	564,134	616,527
준비금에 대한 이자	-5,352	-140,949	-249,567	-260,873	-280,734
마진에 대한 이자	-132,038	-127,329	-115,559	-84,017	-51,757
순이익	199,627	307,878	1,301,714	661,711	910,867

다. 현행유출가치법 사용시**1) 대차대조표**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에도 매 회계연도 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사망률이 3차년도에 개선되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변화된 제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새로이 평가하여 반영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행유출가치법에 의할 경우 3차년도에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 금액의 감소로 인해 오히려 책임준비금의 환입이 일어났다. 사망률이 개선된 3차년도에는 책임준비금이 1,525,836원에서 1,364,278원으로 전년 대비 161,558원이 감소하였다.

유가증권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차년도

에는 679,207원에서 5차년도에는 3,381,797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익잉여금은 1차년도에는 271,468원에 불과하였으나, 사망률의 개선이 이루어진 3차년도에는 1,856,623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별표 3-5> 사망률 개선시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유가증권	679,207	2,098,542	3,220,901	3,805,471	3,381,797
자산총계	679,207	2,098,542	3,220,901	3,805,471	3,381,797
책임준비금	407,738	1,525,836	1,364,278	1,305,339	-
이익잉여금	271,468	572,705	1,856,623	2,500,132	3,381,797
부채와 자본 총계	679,207	2,098,542	3,220,901	3,805,471	3,381,797

2) 손익계산서

현행유출가치법에 의한 당기순이익의 경우 기본 가정의 경우와는 달리 사망률 개선에 따른 영향이 일시에 반영되어, 사망률 추정이 변경된 3차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283,918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에 따른 것으로 회계연도말 평가시점에서 제가정을 사용하여 매 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을 산정함에 따른 것으로 순적립금의 변화 744,376원과 마진의 변화 92,353원에 힘입은 것이다.

현행유입가치법과의 차이점은 초기 이윤 74,498원을 현행유출가치법에서는 인식하지만 현행유입가치법에서는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순적립금 변화액은 동일하지만 마진의 변화는 92,353원으로 현행유입가치법의 마진의 변화인 97,294원 대비 4,941원이 적게 된다.

<별표 3-6> 사망률 개선시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초기 이윤	74,498				
책임준비금 환입	175,000	245,000	350,000	420,000	595,000
추정의 변화			836,729		
순적립금의 변화			744,376		
마진의 변화			92,353		
순 이자	21,970	56,237	97,188	223,509	286,665
이자수익	152,655	318,049	456,446	564,134	616,527
준비금에 대한 이자	-5,352	-140,949	-249,567	-260,873	-280,734
마진에 대한 이자	-125,333	-120,863	-109,691	-79,751	-49,128
순이익	271,468	301,237	1,283,918	643,509	881,665

4. 이자율 하락시

가. 발행연도법 사용시

1) 대차대조표

2차년도 말에 이자율이 2% 하락함에 따라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감소로 인해 x3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기본 가정대비 계약으로 인한 이익의 총액인 x5년도말 이익잉여금이 2,489,787원에서 2,289,596원으로 200,191원이 감소되었다. 신계약비의 이연처리로 인해 자산 항목에 신계약비가 계상되어, 보험계약기간동안 상각처리되었다.

<별표 4-1> 이자율 하락시 발행연도법 적용 대차대조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유가증권	679,206	2,098,541	2,971,583	3,159,894	2,289,596
신계약비	825,826	638,618	438,260	225,154	-
자산총계	1,505,033	2,737,160	3,409,843	3,385,048	2,289,596
책임준비금	1,212,422	2,070,837	2,314,136	1,763,083	-
이익잉여금	292,611	666,323	1,095,708	1,621,965	2,289,596
부채와 자본 총계	1,505,033	2,737,160	3,409,843	3,385,048	2,289,596

2) 손익계산서

발행연도법을 적용하여 이자율이 2차년도에 2% 하락한 경우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익의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 이외에 보험료 수익, 보험금비용, 책임준비금 전입액, 신계약비 상각비 등은 기본 가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이자율이 하락하였을 경우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유가증권의 이자수익 감소분만큼 감소하게 된다.

<별표 4-2> 이자율 하락시 발행연도법 적용 손익계산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영업수익	2,679,206	2,819,335	2,873,041	2,888,311	2,829,702
보험료수익	2,526,551	2,501,286	2,465,914	2,415,383	2,347,166
이자수익	152,655	318,049	407,127	472,928	482,536
영업비용	2,386,595	2,445,623	2,443,657	2,362,054	2,162,071
보험금비용	1,000,000	1,400,000	2,000,000	2,700,000	3,700,000
책임준비금 전입액	1,212,422	858,415	243,299	-551,053	-1,763,083
신계약비 상각비	174,174	187,208	200,358	213,107	225,154
당기순이익	292,611	373,712	429,385	526,257	667,631

나. 현행유입가치법 사용시

1) 대차대조표

현행유입가치법의 경우 매 회계연도말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자율이 2차년도 말에 하락되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변화된 제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여 반영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행유입가치법에 의할 경우 2차년도 말에 이자율이 하락됨에 따라 향후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 금액의 증가로 인해 기본 가정 대비 추가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였다. 기본 가정의 경우 2차년도 말 책임준비금 금액이 1,591,036원이었으나 이자율이 하락한 경우의 책임준비금은 1,810,566원으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219,530원을 추가적으로 적

립하였다. 유가증권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차년도에는 679,206원에서 5차년도에는 2,289,596원으로 증가하였다.

<별표 4-3> 이자율 하락시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유가증권	679,206	2,206,704	3,046,428	3,198,756	2,289,596
자산총계	679,206	2,206,704	3,046,428	3,198,756	2,289,596
책임준비금	479,579	1,810,566	2,207,110	1,748,291	-
이익잉여금	199,627	396,139	839,318	1,450,465	2,289,596
부채와 자본 총계	679,206	2,206,704	3,046,428	3,198,756	2,289,596

2) 손익계산서

이자율이 2차년도 말에 2% 하락한 경우 현행유입가치법에 의해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면 발행연도법을 적용한 경우와는 달리 이자율 하락에 따른 영향이 일시에 반영되어, 이자율이 변경된 2차년도 말에는 당기순이익이 196,511원으로 기본가정 대비 111,367원이 감소하였다.

이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에 따른 것으로 회계연도말 평가시점에 서의 제가정을 사용하여 매 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을 산정함에 따른 것으로 이자율의 변화 -219,530원과 고정금융자산의 미래가치 변화 108,163원에 인한 것이다.

<별표 4-4> 이자율 하락시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초기 이윤	0				
책임준비금 환입	184,362	258,107	368,724	497,777	682,139
추정의 변화		-111,367			
이자율의 변화		-219,530			
고정이율자산의 미래가치 변화		108,163	-33,318	-35,983	-38,862
순 이자	15,266	49,771	107,774	149,354	195,854
이자수익	152,655	318,049	407,127	472,928	482,536
준비금에 대한 이자	-137,390	-268,278	-299,354	-323,575	-286,682
순이익	199,627	196,511	443,179	611,147	839,130

다. 현행유출가치법 사용시**1) 대차대조표**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 매 회계연도말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자율이 2차년도 말에 하락되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변화된 제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여 반영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행유출가치법에 의할 경우 2차년도 말에 이자율이 하락됨에 따라 향후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 금액의 증가로 인해 기본 가정 대비 추가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였다. 기본 가정의 경우 2차년도 말 책임준비금 금액이 1,525,836원이었으나 이자율이 하락한 경우의 책임준비금은 1,742,714원으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216,878원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였다.

<별표 4-5> 이자율 하락시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유가증권	679,207	2,206,704	3,046,428	3,198,756	2,289,596
자산총계	679,207	2,206,704	3,046,428	3,198,756	2,289,596
책임준비금	407,738	1,742,714	2,153,232	1,715,918	-
이익잉여금	271,468	463,991	893,196	1,482,838	2,289,596
부채와 자본 총계	679,207	2,206,704	3,046,428	3,198,756	2,289,596

2) 손익계산서

이자율이 2차년도 말에 2% 하락한 경우 현행유출가치법에 의해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면 발행연도법을 적용한 경우와는 달리 이자율 하락에 따른 영향이 일시에 반영되어, 이자율이 변경된 2차년도 말에는 당기순이익이 196,522원으로 기본가정 대비 108,715원이 감소하였다.

이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에 따른 것으로 회계연도말 평가시점에서 제가정을 사용하여 매 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을 산정함에 따른 것으로 이자율의 변화 -216,878원과 고정이율자산의 미래가치 변화 108,163원에 인한 것이다.

또한, 초기 이윤을 인식하지 않는 현행유입가치법과는 달리 초기에 이윤을 인식하기 때문에 1차년도에 초기 이윤 74,498원을 인식하였으나, 현행유입가치법에서는 보험계약기간동안에 나누어 인식하게 된다.

<별표 IV-6> 이자율 하락시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초기 이윤	74,498				
책임준비금 환입	175,000	245,000	350,000	472,500	647,500
추정의 변화		-108,715			
이자율의 변화		-216,878			
고정이율자산의 미래가치의 변화		108,163	-33,318	-35,983	-38,862
순 이자	21,970	56,237	112,523	153,125	198,120
이자수익	152,655	318,049	407,127	472,928	482,536
준비금에 대한 이자	-130,685	-261,812	-294,604	-319,803	-284,416
순이익	271,468	192,522	429,206	589,642	806,758

5. 이자율 상승시

가. 발행연도법 사용시

1) 대차대조표

2차년도 말에 이자율이 2% 상승함에 따라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증가로 인해 x3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기본 가정 대비 계약으로 인한 이익의 총액인 x5년도말 이익잉여금이 2,489,787원에서 2,696,288원으로 206,501원이 증가하였다.

<별표 5-1> 이자율 상승시 발행연도법 적용대차대조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유가증권	679,206	2,098,541	3,070,219	3,401,904	2,696,988
신계약비	825,826	638,618	438,260	225,154	-
자산총계	1,505,033	2,737,160	3,508,480	3,627,058	2,696,988
책임준비금	1,212,422	2,070,837	2,314,136	1,763,083	-
이익잉여금	292,611	666,323	1,194,344	1,863,975	2,696,988
부채와 자본 총계	1,505,033	2,737,160	3,508,480	3,627,058	2,696,988

2) 손익계산서

발행연도법을 적용하여 이자율이 2차년도에 2% 상승한 경우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익의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이 이외에 보험료 수익, 보험금비용, 책임준비금 전입액, 신계약비 상각비 등은 기본 가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별표 5-2> 이자율 상승시 발행연도법 적용 손익계산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영업수익	2,679,206	2,819,335	2,971,678	3,031,684	2,995,084
보험료수익	2,526,551	2,501,286	2,465,914	2,415,383	2,347,166
이자수익	152,655	318,049	505,764	616,301	647,918
영업비용	2,386,595	2,445,623	2,443,657	2,362,054	2,162,071
보험금비용	1,000,000	1,400,000	2,000,000	2,700,000	3,700,000
책임준비금 전입액	1,212,422	858,415	243,299	-551,053	-1,763,083
신계약비 상각비	174,174	187,208	200,358	213,107	225,154
당기순이익	292,611	373,712	528,021	669,631	833,013

나. 현행유입가치법 사용시**1) 대차대조표**

현행유입가치법의 경우 매 회계연도말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자율이 2차년도 말에 상승하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변화된 제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여 반영을 하게 된다.

<별표 5-3> 이자율 상승시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유가증권	679,206	1,997,735	2,999,286	3,364,430	2,696,988
자산총계	679,206	1,997,735	2,999,286	3,364,430	2,696,988
책임준비금	479,579	1,386,607	1,907,575	1,600,707	-
이익잉여금	199,627	611,127	1,091,712	1,763,723	2,696,988
부채와 자본 총계	679,206	1,997,735	2,999,286	3,364,430	2,696,988

이로 인해 현행유입가치법에 의할 경우 2차년도 말에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향후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 금액의 감소로 인해 기본가정 대비 책임준비금을 적게 적립하였다. 기본가정의 경우 2차년도 말 책임준비금 금액이 1,591,036원이었으나 이자율이 하락한 경우의 책임준비금은 1,386,607원으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204,429원을 적게 적립하였다.

2) 손익계산서

이자율이 2차년도 말에 2% 상승한 경우 현행유입가치법에 의해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면 발행연도법을 적용한 경우와는 달리 이자율 상승에 따른 영향이 일시에 반영되어, 이자율이 변경된 2차년도 말에는 당기순이익이 411,500원으로 기본가정 대비 103,622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에 따른 것으로 회계연도말 평가시점에서의 제가정을 사용하여 매 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을 산정함에 따른 추정의 변화 때문이다. 즉,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204,429원의 (+) 효과와 고정이율자산의 미래가치 변화에 따른 100,807원의 (-)효과가 상쇄되어 나타난 것이다.

<별표 5-4> 이자율 상승시 현행유입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초기 이윤	0				
책임준비금 환입	184,362	258,107	368,724	497,777	682,139
추정의 변화		103,622			
이자율의 변화		204,429			
고정이율자산의 미래가치의 변화		-100,807	29,874	33,459	37,474
순 이자	15,266	49,771	81,986	140,776	213,652
이자수익	152,655	318,049	505,764	616,301	647,918
준비금에 대한 이자	-137,390	-268,278	-423,777	-475,525	-434,266
순이익	199,627	411,500	480,584	672,012	933,264

다. 현행유출가치법 사용시

1) 대차대조표

현행유출가치법의 경우 발행연도법과는 달리 매 회계연도말에 새로운 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자율이 2차년도 말에 상승하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변화된 제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여 반영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행유출가치법에 의할 경우 2차년도 말에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향후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 금액의 감소로 인해 기본 가정 대비 책임준비금의 적립액이 감소하였다. 기본 가정의 경우 2차년도 말 책임준비금 금액이 1,525,836원이었으나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의 책임준비금은 1,323,896원으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201,940원을 적게 적립하였다.

<별표 5-5> 이자율 상승시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대차대조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유가증권	679,207	1,997,735	2,999,287	3,364,430	2,696,988
자산총계	679,207	1,997,735	2,999,287	3,364,430	2,696,988
책임준비금	407,738	1,323,896	1,856,689	1,569,501	-
이익잉여금	271,468	673,838	1,142,597	1,794,929	2,696,988
부채와 자본 총계	679,207	1,997,735	2,999,287	3,364,430	2,696,988

2) 손익계산서

이자율이 2차년도 말에 2% 상승한 경우 현행유출가치법에 의해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면 발행연도법을 적용한 경우와는 달리 이자율 상승에 따른 영향이 일시에 반영되어, 이자율이 변경된 2차년도 말에는 당

기순이익이 402,370원으로 기본가정 대비 101,133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에 따른 것으로 회계연도말 평가시점에 서의 제가정을 사용하여 매 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을 산정함에 따른 것으로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201,940원의 (+) 효과와 고정이율자산의 미래가치 변화에 따른 100,807원의 (-) 효과에 따른 것이다.

<별표 5-6> 이자율 상승시 현행유출가치법 적용 손익계산서

(단위 : 원)

	x1	x2	x3	x4	x5
초기 이윤	74,498				
책임준비금 환입	175,000	245,000	350,000	472,500	647,500
추정의 변화		101,097			
이자율의 변화		201,940			
고정이율자산의 미래가치의 변화		-100,807	29,874	33,459	37,474
순 이자	21,970	56,237	88,885	146,373	217,084
이자수익	152,655	318,049	505,764	616,301	647,918
준비금에 대한 이자	-130,685	-261,812	-416,879	-469,928	-430,833
순이익	271,468	402,370	468,759	652,332	902,058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충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Ⅲ)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희·계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효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2002-1	국내외 보험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신문식, 김경환, 2002. 5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7
-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정석영 2004.12
-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이순재 2005.1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 2005-3 손해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9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욱 2006.1
- 2006-2 보험시장 퇴출에 관한 연구 / 김헌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연구조사자료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욱,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Ⅱ)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Ⅲ)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엄창희, 1999.1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운, 1999.8
-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업창회, 2000.3
-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업창회, 2001.3
-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 2003.3
-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정책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4.11
-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기정 2005.2
-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 이기형,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 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Insurance Business Report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 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 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 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 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 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 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 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 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 6
-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 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 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 10
-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 10
-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 12
-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 2
-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3
- 2004-6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생명보험본부, 2004. 3
-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6
-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2004. 7
-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손해보험본부, 2004. 9
-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4. 10
-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자동차보험본부, 2004. 11
-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손해보험본부, 2004. 12
- 2005-1 생명보험 계약자 속성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5. 3
- 2005-2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 보험연구소, 2005. 4
- 2005-3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3
- 2005-4 FY2005 수입보험료 전망 / 보험연구소, 2005. 6
- 2005-5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차량수리비 관리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5. 7
- 2005-6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CAT 모델 / 손해보험본부, 2005. 7
- 2005-7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감소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7
- 2005-8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암보험 대응방안 / 보험연구소, 2005. 10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정기간행물

■ 월간

- 보험통계월보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 보험통계연감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 내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	-보험개발연구 (연간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	

※특별회원 가입대상: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개발원 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서적

저자약력

이장희

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
한국산업은행(KDB) 기업분석부
LG투자증권 Research Center 금융담당 Analyst
무한기술투자 투자전략팀, 경영전략팀장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부연구위원
(E-mail : lee@kidi.or.kr)

김동경

성균관대학교 경제학석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원
(E-mail : dgkim@kidi.or.kr)

연구보고서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발행일 2007년 1월 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000

ISBN 978-89-5710-043-1

정가 10,000원